

碩士學位論文

한국의 마약범죄와 경찰의 통제방안 연구

A STUDY ON KOREAN DRUG CRIME AND CONTROL
METHODS FOR POLICEMEN

2006年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國際麻藥學科

麻藥政策專攻

崔 榮 桓

碩士學位論文

한국의 마약범죄와 경찰의 통제방안 연구

A STUDY ON KOREAN DRUG CRIME AND CONTROL
METHODS FOR POLICEMEN

2006년 6월 일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國際麻藥學科

麻藥政策專攻

崔 榮 桓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조 성 권

한국의 마약범죄와 경찰의 통제방안 연구

A STUDY ON KOREAN DRUG CRIME AND CONTROL
METHODS FOR POLICEMEN

이 論文을 麻藥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6月 日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國際麻藥學科

麻藥政策專攻

崔 榮 桓

崔榮桓의 麻藥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6年 6月 日

審査 委員長 곽 대 경 (印)

審査 委員 이 상 환 (印)

審査 委員 조 성 권 (印)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국내 마약류 범죄	4
제1절 마약류의 개념	4
제2절 한반도 주변국의 마약류범죄 동향	5
1. 일 본	6
2. 중 국	8
3. 러 시 아	9
제3절 우리나라 마약류범죄 실태와 분석	12

제3장 경찰의 통제방안	30
제1절 수사권 조정을 통한 소프트웨어 강화	32
제2절 마약전문 인력, 예산확보를 통한 하드웨어 보강	39
1. 수사경과 제 도입 등 마약수사관 전문성강화	40
2. 적극적 예산지원을 통한 마약수사역량 강화	44
제3절 국내·외 공동대응체제의 구축	47
제4절 치료와 재활을 통한 사회로의 복귀	49
제4장 결 론	52
참고문헌	55
영문초록	58

도표목차

<표2-1> 일본 마약류사범 연도별 검거인원	8
<표2-2> 국내유통 마약류 도소매 암거래가격	11
<표2-3>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현황	13
<표2-4> 최근 5년간 마약류 압수량 현황	14
<표2-5> 신종마약류 우리나라 밀반입 현황	16
<표2-6> 외국산 마약류 국가별 밀반입 현황	20
<표2-7> 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류범죄 단속 현황	22
<표2-8> 조직폭력배 마약류범죄 현황	24
<표2-9> 조직폭력배 마약류범죄 유형별 현황	25
<표2-10>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26
<표3-1> 수사권구조모형	3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과학문명의 급속한 발달은 국제화와 개방화를 더욱 심화시켜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시대로 바꾸어 놓았다. 지구촌간의 빈번한 교류는 최근 매스컴에서 간혹 등장하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국가정책적인 보도가 나오게 할 정도로 마약범죄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마약문제는 국지적인 규모가 아닌 세계적인 규모의 사회 현상이며 전쟁, 환경파괴 등과 더불어 오늘날 인류가 앓고 있는 해결 곤란한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인 것이며, 마약류 오·남용문제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파멸을 초래하는데 그치지 않고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파괴하는 무서운 사회악중의 하나이다.

오늘날 마약류 문제는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시대로 바뀌고 있음에 따라 마약류조직도 각국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국제적인 범죄조직의 규모로까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봉쇄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더욱이 마약류 문제는 어느 국가나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 현안으로서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각종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만 마약류 오·남용자 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1세기의 정보통신의 발달은 정보네트워크, 하이테크 기술 등을 이용하여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러시아의 마피아, 나이지리아의 신디게이트 등 국제범죄조직의 활동수법을 더욱 고도화, 전문화, 광역화하는데 큰 일조를 하고 있다. 그동안 마약안전지대였던 우리나라도 최근 국제범죄조직의 침투가 가속화되어 외국산 마약류의 유입이 확산되고 있고 국내 폭력조직들까지 국제마약조직 등과 연계하여 마약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중국 등 국제범죄조직들과의 연계로 외국산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 측과도 연계하여 제3국을 경유, 국내 반입 가능성이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IMF 환란 이후 경기 회복에 따른 퇴폐적·향락적인 풍조의 만연은 각종 범죄의 유발가능성을 높이

고, 마약류범죄와 관련된 범죄유형을 다양화시켜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마약류의 오·남용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켜 동물적인 원초적 본능만을 자극하여 쾌락지향성, 폭력성 등을 촉발함으로써 환각상태에서의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필로폰 등 마약류의 투약계층이 종전의 일부 유흥업소 종사자나 부유층, 연예인 등의 일부·특수계층의 틀을 벗어나 현재는 학생, 주부, 농어민 심지어는 전문직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계각층으로 범위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발맞추어 국제 마약범죄 조직들에 의한 마약류 밀반입도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마약 정책적 노력과 국제적인 협조와 응원이 시급한 때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마약류 문제를 이제 단순한 국내적 문제가 아닌 국제적 범죄조직과 연계된 국제범죄조직의 범주로 포함시켜 최근 국제 마약류의 동향과 우리나라 마약동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국제범죄조직들에 의한 마약류 침투 등과 같은 향후 전개될 마약동향을 예측하여 마약통제와 연관된 국가정책에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최근 우리나라 마약범죄 동향과 현실 적합한 경찰의 통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론으로는 기본적으로 기존 문헌에 대한 내용분석을 위주로 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 마약류 범죄의 실태와 분석은 주로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국내 마약범죄에 대한 경찰통제방안이라는 종속변수의 설명을 위한 독립변수로는 크게 세 가지 변수를 첫째, 경찰수사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변수; 둘째, 마약수사관과 관련 예산의 충분한 확보를 통한 하드웨어를 강화하는 변수; 셋째, 마약사범에 대한 범죄적 모델과 함께 단순사용자에 대한 의학적 모델을 설명할 수 있는 치료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강조하는 변수 등이다.

이를 위해 먼저 마약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여 마약류범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보고, 한반도 주변국의 마약류범죄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국제적인 마약류범죄 추세를 예측해본다. 둘째, 검찰청·경찰청·국정원 등 공식자료를 통한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현실적인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마약류 범죄를 규제하는데 한국경찰이 당면한 문제점을 조직 내·외적인 측면에서 발굴하여 그 대처방안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넷째, 우리 실정에 맞는 마약범죄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21세기에 적합한 한국 경찰의 바람직한 마약통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국내 마약류범죄

제1절 마약류의 개념

최근 한국의 마약류범죄의 실태를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마약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마약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마약류는 일반적으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중추신경 작용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하는 물질 중에서 신체적 의존성이나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의하여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물질을 말하며, 약리작용에 따라 흥분제(각성제)와 억제제(진정제)로, 의존성면에서 중독성 약물과 습관성 약물로, 생성원에 따라 천연마약과 합성·반 합성 마약으로, 그리고 제조원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된다.¹⁾

DSM-IV(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ition, 2000)에 의하면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 dependence),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으며(내성 ; tolerance), 이를 중단할 경우 고통과 부작용이 따르고(금단증상; withdrawal),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①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②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③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④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러한 마약류를 규제하기 위한 국내 법률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²⁾를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해방 후 50년대는 일제

1)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4, p.4

2) '마약' 또는 '마약류'라는 용어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총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마약과 마약류는 엄밀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마약이란 앵숙·아편 및 그 자체와 이에 유사한 약리작용 및 중독 작용이 있는 물질을 말하며, 마약류란 마약을 포함하여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총괄적으로 일컫는 개념으로 마약보다는 그 범위가 넓다. 또한 마약류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의 정책적 영향의 과장으로 아편, 60년대 아편중독의 치료제로 등장한 메사돈, 70년대 대마초, 80년대 메스암페타민(일명 : 히로뽕), 90년대는 메스암페타민이 주종을 이루면서 세계화 경향과 함께 헤로인, 코케인, 엑스터시(Ecstasy : MDMA) 등 외국에서 새로운 신종마약이 유입되면서 다양화하는 추세이다.³⁾

신종마약류란 용어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마약류는 물론이고 과거에 있었을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남용사례가 거의 없다가 최근 들어 널리 확산되고 있는 약물 또는 물질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을 일컫는다. 이들이 기존 마약류와 구별되는 점은 환각이나 흥분 효과의 배가, 성적 각성능력의 증진, 체중의 감소 등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개발되었고 특히, 사용상의 불편함을 크게 개선시킨 점에 그 특징이 있다.⁴⁾

제2절 한반도 주변국의 마약류범죄 동향

EU 마약류관리청 2004년도 연차보고서 발표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역사상 가장 높은 마약류 사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의 경우 1~10%가 코카인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마리화나의 경우 가장 대중적인 마약류로서 매일 약 3백만 명의 유럽인이 마리화나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⁵⁾ 또한, 환각제⁶⁾가 암페타민(Amphetamines)을 추월하는 경향을 보이고

개념이고, 세계적으로 약물(dru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약물이라는 용어는 과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식품이외의 물질로서 그 화학적 성질에 의하여 생명체의 구조 또는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물질을 의미한다. (송광섭, 우리나라 마약류범죄의 최근 동향과 그 대처방안, 「비교형사법 연구」 제4권제1호, 2002, p.325)

3) 조성권, “21세기 국가 반마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21세기 한국 마약정책의 새 방향」 2002. p.187

4) 전대양, “신종 마약류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2003, p.92

5) 영국,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의 경우에는 성인인구 5명 중 1명이 한번 이상 마리화나 이용을 시도한 경험이 있으며, 반면에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6) 환각제(Hallucinogens)는 현실의 왜곡과 같은 정신 상태나 기분에 급격한 변화를 일컫는 약물로 감각의 변화·망상·환상·환시·환청·환취·환촉 등을 야기하며 환상약(illusionogenics, psychedelics, mind-expanding)이라고도 한다. 환각물질의 역사는 세계 각지 원주민들의 종교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남용약물로서는 1938년 알버트 호프만 박사가 최초로 LSD를 합성하면서 비롯되었다. 환각제의 종류로 DMT·LSD·MDA·PCP·PMA·STP(DOM)·TMA와 같은 합성환각제와 메스칼린·실로사이빈·나팔꽃씨·흰독말풀·육두구와 같은 천연환각제가 있다.(국가정보원, 2003, pp. 121-122)

있으며, EU 성인인구의 0.5~0.7%가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헤로인의 경우는 대부분 회원국에서 이용률이 정제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⁷⁾

2002년의 경우 전 세계 암페타민 압류량의 86%가 EU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환각제의 경우에도 EU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생산지가 되고 있는데 특히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의 경우 약물로 인한 사망자 수는 8,838명이었으나 2001년에는 8,036명으로 감소하는 등 약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주사를 이용한 마약류 이용의 감소, 대체약물에 의한 치료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맥류 주사를 통해 마약류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 85%가 B형 간염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와 AIDS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사 교환 프로그램(Needle Exchange Programmes)이 확산되고 있으며 대체약물 치료 대상자수도 2002년 320,000명에서 2003년에는 410,00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마약류 사용 등의 최근 추세와 관련하여 한반도 주변국의 마약 범죄동향을 조명해 볼 필요성이 있다.

1. 일본⁸⁾

일본의 야쿠자는 18세기 중반 보부상 집단 ‘데끼야’와 전문 도박집단 ‘바쿠토’를 모체로 성장하여 현재 야마구찌구미(山口組) 등 3천여 개 조직 8만여 명이 활동 중이며, 매춘, 마약, 도박 등 불법사업 뿐만 아니라 건설업, 파칭코, 운수업 등 합법적인 사업에도 개입하는 등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1992년 3월 일본정부의 ‘폭력단 대책법’ 시행 등 강력한 단속 이후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해외진출을 통한 활동기반 구축에 주력하면서 중국 및 남미의 범죄조직 등과 연계하여 남미산 코카인, 헤로인 등을 아시아, 유럽지역 등으로 밀매하는 한편,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⁹⁾에서 생산되는 아

7)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의 2004 World Durg Report에 의하면, 세계 마약남용인구는 전체 인구의 3%인 1억 8,500만 명으로 추산되며 대마 남용자가 가장 많은 가운데 ATS(Amphetamine-type-Stimulants ; 메스암페타민 · 암페타민 · 엑스터시), 아편계마약(헤로인 · 모르핀 · 아편), 코카인 남용자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8) 이하에서는 ‘신의기, “외국 마약조직의 국내침투 실태와 차단방안” 「국제범죄 대응정책 연구논총」, 창간호, 2005, pp.134-158와 ‘마약류범죄백서(대검찰청, 2004)’를 주로 참조하기로 한다.

편, 헤로인, 메스암페타민¹⁰⁾ 등 마약류 밀매사업에 적극 개입하는 등 활동범위를 국제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 야쿠자는 전체의 1% 정도인 재일교포 출신 야쿠자를 중심으로 국내 폭력조직과 자매결연을 맺는 등 결속을 강화하면서 마약류 사업에 진출을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의 폭력조직과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¹¹⁾

이들 야쿠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조직을 은폐하기 위해 우익단체로 위장하여 성금기탁, 장학회 설립 등을 통해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활동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호텔, 빌딩, 백화점 등 부동산 매입을 비롯하여 카지노 투자 등 합법 투자로 가장하여 우리나라 침투를 기도하면서, 최근 합법화된 대부업에도 손을 뻗쳐 합법적인 활동기반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의 2003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은 17,171명으로 전년도 19,219명 대비 10.7%가 감소하였으며, 전체 마약류사범의 85.2%를 점유하고 있는 메스암페타민 사범은 14,624명으로 전년대비 13.8% 감소한 반면, 마약사범은 515명으로 전년대비 57.5%, 대마사범은 2,032명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하였다. 참고적으로 마약사범 중 코카인사범은 58명으로 전년대비 5.52% 증가, 헤로인사범은 72명으로 전년대비 80% 증가, 아편사범은 50명으로 전년대비 16.3% 증가하였다.¹²⁾

9) 황금의 삼각지대는 미얀마의 태국 인접 국경지역, 라오스의 태국 인접 국경지역, 태국지역, 미얀마의 중국 인접 국경지역의 고원지대를 말하며, 양귀비 재배에 최적지로서 1년에 3회 수확이 가능하며 연간 약 100만 톤의 생아편을 채취한다. 해발 2,000미터가 넘는 산악지대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소규모 부족들로 구성된 주민 80만 명이 아편재배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가뭄 등 기후조건의 악화와 해당국의 재배지 감축노력 및 대체작물 개발 프로그램으로 황금의 삼각지대 내의 아편재배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국가정보원, “마약류해설”, 2003, pp.122-123)

10) 일본의 전체 마약류사범 중 대부분(2003년 기준, 85.2%)을 차지하고 있는 메스암페타민의 밀거래는 일본 폭력조직과 중국 및 대만에 본거지를 둔 국제범죄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11) 특히, 부산, 대구지역의 폭력조직인 칠성과, 당감동파, 서면파, 대신동파, 동성로파 등 폭력조직과 연계하여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 거래에 개입하고 마약 정보제공자나 수사공무원을 살해하는 범죄도 저지르고 있다.

12) 나머지 335명은 MDMA등 기타 향정신성약품 사범인데 일본에서는 통계상 마약사범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2-1〉 일본 마약류사범 연도별 검거인원

(단위: 명, 증감율)

연도별 마약류	1999	2000	2001	2002	2003
합 계	19,764 (6.8)	20,382 (3.1)	19,955 (-3.6)	19,219 (-3.7)	17,171 (-10.7)
마 약	355 (-5.3)	289 (-18.6)	285 (-1.4)	327 (20.7)	515 (57.5)
메스암페타민	18,285 (8.3)	18,942 (3.6)	17,912 (-5.4)	16,964 (-6.3)	14,624 (-13.8)
대 마	1,124 (-9.1)	1,151 (2.4)	1,525 (26.0)	1,873 (22.8)	2,032 (8.5)

출처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5, p. 292

2. 중국

홍콩과 대만에 기반을 둔 중국계 범죄조직으로 50여개의 조직에 10만여 명의 단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마약, 총기밀매 및 청부폭력 등 활동을 전개하면서 최근에는 중국인 불법어민, 차량밀수, 자금세탁, CD 및 신용카드 위조예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이들은 헤로인이나 메스암페타민 등의 마약을 미국과 일본으로 밀반입하는 중간루트로 우리나라를 이용하거나, 국내 범죄조직과 연결하여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를 국내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중 교류 및 교역증대에 편승하여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생산된 메스암페타민 등의 국내밀반입을 기도하고 있으며, 합법을 위장한 사업체 운영을 통해 불법 자금세탁, 카지노사업 등 오락산업으로도 진출을 획책하고 있다.

UN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 황금의 사각지대에서 생산된 70~80통의 헤로인은 중국-미얀마 국경지역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입되어 소비되었으며, 국제 마약조직이 중국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새롭게 이용하는 인도, 네팔 등지를 경유하는 밀반입루트와 2003년 3,600톤 이상의 헤로인을 생산한 아프가니스탄이 중국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광둥 및 후지안 지역에서는 ATS(암페타민류 각성제)의 밀매 및 제조가 성행하여 중국내 전체 압수 량과 밀조공장 적발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산둥·라이오닝 등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에서 생산된 메스암페타민은 주로 필리핀, 한국, 일본 등지로 밀수출되고 있으며, 중국산 원료물질은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헤로인 생산을 위해 쓰이고 있다. 특히 메스암페타민과 엑스터시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인 1-Phenyl-2-Propanone (B M K) 와 3,4-Methylenedioxyphenyl-2-Propanone(PMK)는 네덜란드, 벨기에 등 지역으로, 에페드린은 러시아로 밀수출되고 있다.

중국내 최대남용 마약은 헤로인으로, 2003년 등록된 전체 마약사범 약 105만 명 중 78만 명 이상이 헤로인 사범이다. 이 밖에 엑스터시, 케타민 등 향정신성물질의 남용도 증가 추세이며, 전체 마약사범 중 72%이상이 청소년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3. 러시아

1980년대 말 구소련 붕괴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공권력 위축과 경제 질서 혼란을 틈타 정보요원, 공산당 간부 등을 주축으로 결성되어 현재 약 9,000여개의 조직에 10만 여명이 활동 중이다.

구소련 붕괴 이후에 급성장한 러시아 마피아는 풍부한 자금을 이용하여 미국, 카리브 지역 등에 진출하여 현지 국제범죄조직과 연계하면서 은행, 위장회사 설립 등을 통하여 마약밀매 대금 등 불법자금을 돈세탁(money laundering)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지역 마약조직과 연계하여 동남아 마약 생산국과 미국, 유럽 등 소비국을 연결시켜 주는 한편, 중남미 마약 카르텔과도 교류하여 남미산 코카인을 유럽 등지로 밀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아시아 폭력조직과 동남아 마약카르텔과 연계하여 러시아의 첨단무기와 남미산 마약류를 구상무역 형식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유럽지역에서 마약류밀거래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러시아 등 국가에서 자금 세탁하여 각종 국

제범죄의 불법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인접한 연해주나 사할린의 극동지역 마피아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국내거점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부 무역업자와 조직폭력집단이 결탁하여 러시아 상인과 관련된 채권 해결을 미끼로 무기밀매, 자금세탁, 러시아인 매춘 알선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마약류 밀반입도 시도하고 있다.

2002년 러시아 푸틴 정부는 국제테러 조직범죄 및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마약류 조직을 오늘날 러시아의 위협세력으로 간주하고, 마약류 수요 감축 및 예방을 위한 전략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로 반입되는 대부분의 헤로인과 아편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된 것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유럽으로 가는 것으로 한 해 평균 50~60kg의 헤로인이 러시아를 통해 유럽으로 밀반출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마약류 중독자 수가 4배정도 증가하여 2003년 현재 약 3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공식적으로 등록된 마약류 중독자수는 40만 명 이상으로, 아편류 중독자 51.5%, 대마중독자 26.5%, 암페타민류 중독자 3.5%, 코카인 중독자가 3%를 차지한다. 마약류 관련사건 중 전체 압수량의 50% 이상이 국외에서 밀수된 것이며, 외국산 마약류의 80~90%가 모스크바와 레닌 그라드를 통하여 밀수되었다.

아편 및 헤로인의 경우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에서, 대마초는 우크라이나 등 중앙아시아에서, 에페드린을 포함한 원료물질은 중국에서, 합성마약류는 서유럽 등지에서 밀반입되고 있으며 주로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의 소수민족과 서아프리카인 들이 밀매와 유통을 장악하고 있다. 러시아는 동·서남 아시아산 헤로인 및 코카인의 서유럽 시장 공략의 중간 경유지로서만 여겨졌으나 최근 서남아시아산 헤로인이 중앙아시아를 경유하여 국내소비를 목적으로 밀 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소비를 위한 암페타민 등 합성마약 생산은 현재까지 소규모이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러시아에서 생산된 엑스터시(MDMA)의 경우 네덜란드산보다 질이 떨어지나 가격이 US\$20인 네덜란드산보다 훨씬 낮은 US\$5로 거래되기 때문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남용되고 있다. 참고적

으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약류의 도소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표 2-2〉 국내유통 마약류 도소매 암거래가격

(단위: 원)

구분	품 명	도매(1g)	중간도매(1g)	소매(1g)	1회분
마 약	헤 로 인	-	-	-	25,000(부산)
	생 아 편	-	19,000(의정부)	50,000(부산) 30,000(북부) 30,000(의정부) 35,000(청주)	30,000(수원;0.3g) 30,000(부천)
	코 카 인	-	-	-	-
향 정	필로폰	130,000 (전국평균)	340,000 (전국평균)	880,000 (전국평균)	100,000 (전국평균)
	MDMA(정)	2,000(전주)	10,000(전주)	40,000(수원) 30,000(전주)	30,000(전주)
	LSD(정)	-	-	21,400(서울)	-
	YABA(정)	-	-	30,000(서울)	50,000(광주)
	날부핀(정)	2,000(북부)	-	-	-
	러미라, 에스정(정)	10(울산) 100(수원)	150(수원) 250(광주)	300(수원) 240(남부) 200(북부) 140(전주) 120(청주) 1,000(창원)	500(청주) 200(창원) 250(광주) 500(서부)
대 마	대 마 초	1,000(서울)	2,000(서울) 10,000(수원)	4,000(서울) 7,000(북부) 12,000(수원) 2,000(창원)	1,500(서울) 2,000(북부) 5,000(대구) 2,000(부산) 2,000(창원) 3,000(청주)
	대마종자	-	20(울산)	100(서울)	2,000(창원) 2,000(부산)
	해 쉬 쉬	-	-	50,000(청주) 30,000(북부)	40,000(수원)

출처 : 대검찰청, “마약관련 통계자료”, 2006.3월

제3절 우리나라 마약류범죄 실태와 분석

최근 우리나라의 마약류범죄와 관련한 추세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마약류 밀반입의 급속한 증가추세와 마약류 남용계층의 확산이다. 최근 마약류 범죄는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산 마약류가 공항·항만을 통하여 대량으로 밀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으며, 마약 남용계층도 종전의 특수신분 계층에서 일반 서민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등 우리나라의 마약범죄 유형도 선진국 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사회 전반의 퇴폐·향락 풍조의 만연과 밀매조직들이 개입하여 마약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박리다매(薄利多賣) 방식으로 판매 공세를 벌이고 있어 마약류 투약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¹³⁾¹⁴⁾

1995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던 전체 마약류사범이 1999년 처음으로 1만 명 선을 넘어선 뒤 2002년까지 4년 연속 1만 명 선을 상회하였으나, 2002년도에 강력한 단속효과에 힘입어 밀수 등 공급조직 10개 파 224명이 단속됨에 따라 마약류 공급선 차단으로 2003년도에 마약류사범이 급감하여 그 여파가 2004년도에도 계속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마약류사범의 분포비율은 1995년도 이래 향정사범의 점유율이 50%를 상회하기 시작하여 2001년에는 78.8%, 2002년은 74.2%를 차지하였고, 2003년에는 62.7%, 2004년의 경우에는 68.6%를 차지함으로써 향정이 국내 주종 마약류임을 알 수 있다.¹⁵⁾

1996년도 이후 주요마약류 압수량은 연평균 82kg수준을 유지하다가 2001년도에는 462.3kg으로 전년 181.7kg 대비 154.4%가 급증하였으나, 2002년도에 273.9kg이 압수되어 전년대비 40.8% 감소한 이후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신종마약류인 엑스터시의 압수량은 2002년도 39,011정, 2003년도 37,784정, 2004년도 20,388정으로 2001년도 1,672정 대비 대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GH B¹⁶⁾, 마약류를 과자 등의 형태로 변경시킨 해시브라우니, 메칠페니데이트, 마약

13) 경찰청, 「경찰백서」, 2005. p. 177

14) 미국의 경우, 코카인이 크랙(Crack)의 형태로 대부분 도시에서 남용되고, 헤로인의 공급량 증가에 따른 국내가격 하락 및 순도상승 등 원인으로 일부 크랙 사용자가 헤로인으로 전이하여 헤로인 남용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5)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5, p.121

16) GHB(Gamma Hydroxy Butyrate ; 물뽕)는 뷰티산계 유기화학물질로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광범위한

류대용약물인 케타민¹⁷⁾ 등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¹⁸⁾

〈표 2-3〉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현황

(단위: 명)

연도별 마약류	2000	2001	2002	2003	2004
합 계	10,304 (-2.7)	10,102 (-2.0)	10,673 (5.7)	7,546 (-29.3)	7,747 (2.7)
마 약	954 (3.4)	661 (-30.7)	790 (19.5)	1,211 (53.3)	1,203 (-0.7)
향 정	7,066 (-5.5)	7,968 (12.6)	7,918 (-0.5)	4,727 (-40.3)	5,313 (12.4)
대 마	2,284 (4.4)	1,462 (-35.1)	1,965 (32.6)	1,608 (-18.2)	1,231 (-23.4)

출처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5, p.121 주) ()는 전년대비 증감율

약리학적 효과(환각, 수면, 진정)를 가질 수 있는 진정제이기 때문에 FDA가 공식적으로 부작용을 인정하고 시판을 금지한 약물이다. 저용량에서는 불안을 해소시키고 이완시키지만 용량을 증가시키면 잠을 자게하고 최후에는 혼수상태나 사망에 이르게도 한다. 또한 GHB는 성범죄용으로도 악용되어 에이트 강간약물(Date-Rape Drug)로 불리며, 인터넷과 불량서적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비법으로 만들 수 있으며, 메스암페타민과 함께 사용될 때 발작의 위험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4시간 이내에 인체를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후 추적이 불가능하다.

17) 케타민(Ketamine)은 주로 사람 및 동물의 마취제로 사용되며, 정맥 마취주사제와 달리 중추신경계의 특정부위에 작용하여 진통효과를 나타내나 약기운이 사라지면서 환각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파티장에서 엑스터시 대용으로 주로 사용하며 남용인구가 확산되고 있다.

18)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5, p.33

〈표 2-4〉 최근 5년간 마약류 압수 량 현황

구분 마약류	품명	단위	2000	2001	2002	2003	2004
마약	앵속	주	27,667	12,566	18,685	58,945	24,173
	생아편	g	3,388	218	258	25,284	1,714
	헤로인	g	380	567	1,078	7	12
	코카인	g	1,800	111	1,170	905	8
향정	메스암페타민	g	46,079	169,562	36,817	64,669	12,192
	메스암페타민 반제품	g	5,100	5,000	0	140	0
	염산에페드린	g	10,000	0	0	0	0
	엑스터시 (XTC)	정	8,786	1,672	39,011	37,784	20,388
	야바(YABA)	정	3,994	2,095	0	767	0
	LSD	정	191	0	0	900	7
	기타향정약품	정	359,491	147,375	955,882	942,743	332,089
대마	대마	주	138,715	4,255	14,681	5,724	58,769
	대마초	g	106,503	283,869	194,795	37,274	36,162
	대마종자	g	363,390	55,690	158,968	10,222	55,385
	해쉬쉬	g	592	4,254	765	3,279	11,366
기타	마약류 제조기구	점	38	10	0	0	0
	마약류 제조약품		13	7	0	0	0

출처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5, p. 124

이러한 신종마약류의 압수 량 증가추세는 기존 마약류에 비해 환각 작용이 강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등 신종 마약류 자체의 내재적 요인¹⁹⁾과 마약류 남용계층 또한 과거 전통적인 취약 직업군에 속하던 무직자, 유흥업 종사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상대적 건전계층인 회사원, 학생, 가정주부, 의료인 등으로까지 확산된 외재적 요인²⁰⁾에 기인된다 할 수 있다.²¹⁾ 특히, 수요적 측면

19) 배성태, “국제마약류 확산에 따른 21세기 한국마약정책에 관한 연구”, 한성대, 2005, pp.17-23

20) 정대표, “한국의 마약문제의 실태와 대응”, 「동북아시아 마약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 2004. p.8

21) 이를 반영하는 사례로, 서울 용산경찰서는 2002년 5월 해쉬쉬와 엑스터시 등을 대학생 등에게 공급한 혐의로 서울 모 대학교 영어교수 K(42, 미국인), M(26, 미국인)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에서 20~40대의 청·장년층이 전체사범의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노동 생산성 저하 등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²²⁾ 신종마약류에 대한 우려 점은 다음과 같은 기사내용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전략)신종 마약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올 들어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신종 마약은 환각 효과가 강력하고 사용이 간편해 젊은 층에서 급속히 번지고 있다. (중략)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적발된 LSD, 야바²³⁾, 엑스터시(MDMA) 등 신종마약류의 반입량은 1만2,913정으로 지난해 35정에 비해 무려 370배나 늘었다. 90년대 초 일부 연예인들이 복용하다 처음 적발된 LSD는 그 뒤 거의 발견되지 않다가 올해 다시 191정이 압수됐다. 엑스터시는 지난해 처음 밀반입 사실이 확인됐고 올들어서는 8,728정이 적발됐다. 태국산으로 ‘복용하면 미친 말처럼 날뛰다’는 뜻의 야바는 3,994정이 압수됐다. 더욱이 검찰은 적발된 마약류의 양은 실제 밀반입량의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체에 크게 유해 복용한 뒤 머리를 흔들며 춤을 추면 환각 증상이 더 커져 국내에서는 일명 ‘도리도리’로 불리는 엑스터시는 환각효과가 메스암페타민(히로뽕)의 3배가 넘는다. 이 마약은 뇌신경에 큰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략)유럽이나 미국 등의 청소년들 사이에 복용이 확산되고 있는 신종 마약은 해외유학생이나 외국인이 주로 갖고 들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 일대 유흥가에서 대학생, 연예인, 회사원 등 고학력층 사이에 번지고 있다.(출처: 대한매일: 2000/12/11)

터 마약을 공급받아 상습 투약한 국내 유명 대학교 학생 이모(20)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모 여대 김 모(21, 여)씨 등 6명을 불구속입건 했다. 이들 중에는 교포 고교생과 국내 대학생 7명, 전 주한미군, 학원 영어강사, 초등학교 영어교사 등이 포함돼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2001년 7월 경 미국인 D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해쉬쉬와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대학생 등에게 판매한 혐의이며,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이 씨 등은 서울 마포구 홍대 입구와 을지로 입구, 압구정동 등의 테크노 클럽과 술집 등에서 레ιβ 파티를 즐기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은 사건을 들 수 있다.

22)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4, p.33

23) 야바(Yaba)는 정제형 메스암페타민으로 메스암페타민 20~30%에 카페인 60%, 코데인 등을 혼합하여 만들며, 태국, 미얀마 등 동남아에서 남용되고 있다. 최초 미얀마 산악의 ‘쿤사’ 조직이 개발하였으며 현재 Wa族, 고강族 등 소수민족이 주로 밀조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말처럼 힘이 솟고 발기에 좋은 약’이라고 해서 ‘Horse Medicine’으로 통용되고, 대만에서 야마(藥馬, 원기 나는 약)라고도 불린다. 가격이 저렴하고 복용이 간편하여 주로 청소년, 유흥업소, 종사자 등이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약품으로 위장하여 운반하거나 소포로 배달하는 수법을 이용하여 일본, 호주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국가정보원, 「마약류해설」, 2003, p. 72). 복용 후 수분 내에 효과가 나타나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30시간까지 높게 지속되어 신경조직이 파괴되며 탈수증세도 나타난다.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며 도취감과 아울러 흥분감, 공격성, 우울증을 보이고 수일간 계속 다량을 복용하면 정신착란, 공포, 환각증세까지 일으킨다.

〈표 2-5〉 신종마약류 우리나라 밀반입 현황

(단위: 정)

연도별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야 바	태 국	8,010 (3,990)	2,018 (2,018)	0	380 (380)	0
엑스터시 (MDMA)	러 시 아	0	0	38,637 (38,637)	0	0
	캐 나 다	0	0	549 (49)	745 (745)	512 (512)
	미 국	539 (539)	545 (495)	32 (9)	289 (162)	78 (78)
	네덜란드	100 (25)	0	54 (39)	0	0
	태 국	0	890 (500)	660 (0)	0	3 (3)
	프 랑 스	0	0	0	0	19,675 (19,675)
	중 국	0	0	0	2,000 (876)	0
LSD	네덜란드	190 (178)	0	0	0	0
	캐 나 다	0	0	0	900 (900)	0
합 계		8,839 (4,732)	3,453 (3,013)	39,932 (38,734)	4,314 (3,063)	20,268 (20,268)

출처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5, p.134, 주) ()는 압수 량,

2004년도 신종 마약류 밀 반입량은 총 20,268정으로 전년도 대비 370%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프랑스가 신종마약류 밀반입 국으로 급부상한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편 MDMA²⁴⁾나 LSD는 해외유학생이나 외국인 학원 강사 등 고학력

24)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또는 필로폰(philopon)은 염산에페드린(Ephedrine Hydrochloride)을 원료로 합성한 암페타민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1888년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 교수인 나카이 나가요시 박사가 한방에서 천식약제로 쓰이는 마황에서 에페드린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처음 발견하였다. 통상 미국에서는 스피드(Speed, 액체형태) 또는 아이스(Ice, 고체형태), 일본에서는 각성제(히로뽕), 필리핀에서는 샤부(Shabu), 대만에서는 아미타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필로폰, 히로뽕, 백색의 공포(공포의 백색가루), 악마의 가루 등으로 불린다. 마약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백색의 황금, 뽕, 가루, 술, 크리스탈 등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메스암페타민은 자신감, 만족감, 흥분, 불면증 등을 일으켜 동공산대, 혈압증가, 맥박증가, 손떨림 등의 증상을 발현한다. 결정체 또는 분말형태로 백색·연회색을 띠고 약한 신맛이 난다. 결정체형은 주로 중국 등 아시아에서 생산되어 일본, 하와이, 필리핀, 대만, 미국 서부지역에서 소비되고, 분말 형은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생산·소비된다.(국가정보원, “마약류해설”, 2003, pp.36-38)

계층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²⁵⁾

신종 마약류의 공급루트와 관련하여 엑스터시는 네덜란드나 독일, 벨기에 등 주로 유럽지역에서 생산되어 북미²⁶⁾나 남미, 뉴질랜드 등지로 공급되고 있으며, 야바는 헤로인 공급조직으로 악명 높은 미얀마 반군조직 UWSA(United Wa State Army) 등에 의해 주로 생산되어 유럽이나 아시아, 남미 등지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마약류의 밀거래 수법의 첨단화·지능화이다.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는 2002년 2월 27일 연례보고서를 통해 마약중개상들이 개인 대화방을 통하여 마약류를 팔고 있음을 지적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마약거래를 규제할 후 있는 유엔협정 채택을 제안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체코에서는 인터넷 카페나 휴대전화를 통해 불법 마약류의 판매 및 구입이 가능하며, 네덜란드 기업들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 씨앗과 부산물을 세계전역에 판매한다고 한다.²⁷⁾

또한 태국에서는 허가를 받은 온라인 의약품 판매업체가 향정신성물질을 비롯하여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마약류들을 공개적으로 팔고 있으며 통신과 인터넷의 발달에 편승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마약자금을 세탁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 이러한 마약류들이 해외로부터 밀반입되어 국내 수요자에게 도달되는 경로와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하는 추세이어서 마약류 거래를 적발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실정

25) 미국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코카인 및 헤로인 대용으로 남용되기 시작한 MDMA는 파티장(rave)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미국 전체인구의 1.4%에 해당하는 약 470만 명이 사용한 경험이 있는 마약류로 하와이, 미국 서부 연안지역(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유타, 텍사스 등)에서 주로 남용되고 있었으나, 최근 동부 쪽으로 남용인구가 확산되고 있으며, 몇 시간씩 지속적으로 자극적인 효과(Clash)를 완화하기 위해 헤로인이나 알코올과 함께 사용하고, 약 356,000여명이 메스암페타민 중증 중독자라고 알려져 있다. 태국에서는 2003년에 메스암페타민 6.5톤을 압수함으로써 세계 최대 메스암페타민 압수국이 되었으며 1987년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메스암페타민 공장이 적발되었으며, 당시 제조기술자는 대만 또는 홍콩인이었으나 최근에는 태국인이 직접 제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로 남용되는 형태는 메스암페타민 분말(10~30%)에 카페인, 파우더, 색소 등을 첨가한 0.06~0.1kg 정도의 정제(타블렛)형 메스암페타민(속칭, YABA)으로 트럭운전자나 공장근로자들이 졸음을 쫓기 위해 근로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점차 젊은 층을 중심으로 쾌락목적의 위한 사용이 급속히 증가되었다.

한편, 호주에서도 코카인이나 암페타민류 각성제의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주로 남용되는 마약류는 대마초, 암페타민, 헤로인 순이고 최근 몇 년간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는 환각효과를 내는 엑스터시(MDMA)가 댄스 파티장에서 널리 남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26) 특히 미국의 마이애미와 올란드 지역에서는 헤로인과 합성한 신종 엑스터시(rolling)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다.

27) 호주의 경우, 청소년층에서 남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MDMA는 유럽(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인도네시아)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상당량이 밀반입되고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 발리는 호주내 밀반입을 위한 관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다.²⁸⁾ 같은 맥락에서 전대양 교수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전략)최근 경찰에 적발된 대학교수와 외국인이 낀 엑스터시와 해쉬쉬 등 대규모 공급·유통조직원 중 한 명은 교포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엑스터시를 복용해 지금 느낌이 최고다”라는 영문의 글을 띄워 엑스터시를 홍보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LA에 주소를 둔 인터넷상의 약품판매 사이트는 한국인들을 노려 한글로 작성되어 이곳을 통해 엑스터시와 같은 신종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마약류는 약값에 운송료만 추가하면 국내에서도 바로 배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속기관은 인터넷을 타고 흘러 들어오는 마약에 대해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출처: 전대양, “신종 마약류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pp. 102~103)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광명서는 2004년 11월 11일 ‘필로폰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려던 피의자 김OO(37)를 검거하였는데, 피의자가 타인 명의로 카페에 가입하여 인적 사항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각적인 경찰수사기법을 활용, 약 4개월간 지속적인 수사 끝에 광명 고속전철역에서 필로폰을 건네려는 피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하였다.

경기 안산서는 2004년 12월 20일 국제우편 크리스마스카드를 이용하여 필리핀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1.8g을 밀반입한 외국인 판매책 파브OO(‘조지’라는 가명을 사용) 등 2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반월공단에서 근무하면서 공단 기숙사 캐비닛속에 필로폰을 보관하면서 안산·수원·광명 등 경기일원 거주 필리핀인들을 상대로 판매하려는 혐의이다.

셋째, 마약류 공급루트의 국제적 연계성과 변화의 다양성이다. 기존 우리나라의 주종마약류는 메스암페타민으로, 국내의 기술자에 의해 타국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의 마약복용자에게 공급하였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한일간의 수사공조체제로 인해 국내 메스암페타민 공급조직은 거의 근절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마약류 공급물량 부족을 야기하여 외국의 마약류 밀반입이 시작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²⁹⁾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메스암페타민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28) 조병인, “마약류 불법유통과 규제전략”,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2호, 2002, p.198

29) 태국의 경우에도 2002년 12월 국왕이 자신의 생일 연설에서 태국국민의 마약류 남용실태와 피해정도에

밀반입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필리핀, 홍콩, 태국, 일본, 미국 등지로부터 밀반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³⁰⁾

또한, 2002년도에 러시아에서 최초로 MDMA³¹⁾ 38,637정이 밀반입되었고, 네팔에서 해쉬쉬 2kg이 밀반입 되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마초 137.5kg, 방글라데시에서 헤로인 1.1kg, 브라질에서 코카인 1.2kg이 밀반입되는 등 마약류 공급루트를 점차로 다변화하고 있다. 2003년도에 나이지리아에서 대마초 15kg, 캐나다에서 LSD³²⁾ 900정, MDMA 745정, 미국에서 코카인 905g이 각 밀반입되는 등 최근 북미의 주종 마약류도 밀수입되고 있다.³³⁾ 2004년도에 중국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6.41kg이 밀반입(국내 밀반입 메스암페타민 총량은 10.17kg)되어 중국이 여전히 對 한국 마약류 핵심수출국임을 반영하고 있다. 그 외 필리핀, 미국, 대만 등이 새로운 밀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³⁴⁾

대하여 깊은 우려와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이에 태국 정부는 국왕의 다음 생일인 2003년 12월까지 ‘마약 없는 태국’을 목표로 한 국내외 마약류 밀수, 판매, 남용 등의 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에 착수하여 2003년 한 해 동안은 상당한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으며, 최근 정부의 마약작물 근절 및 고산지 개발 정책에 힘입어 세계 최대 아편 생산지인 ‘황금의 삼각지대’가 북부 고산지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크게 격감되어가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아편생산국이 아닌 주변국으로부터 아편을 밀수하는 수입국으로 변해가고 있다.

30) 황진수, “마약류 범죄 실태와 경찰의 역할”, 『마약범죄연구』, 제6권 제0호, 2000, p.35

31) MDMA(Ecstasy)는 암페타민류 화학물질로서 환각성 신종마약이며, 1914년 독일의 제약회사에서 엑스터시 합성에 성공, 식욕억제제로 사용하였으나, 효능을 인정받지 못해 한동안 거래가 중단되었다가, 타인에 대한 호감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어 1986년 지중해 섬에서 관광객들이 댄스파티에 사용한 이래 1987년 영국의 레ιβ 파티를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과량 복용 시 경련, 식욕상실, 정신착란, 혼수상태 등을 야기하며 특히, 신경계통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온다. 중국에서는 약오토우환(搖頭丸), 미국에서는 아담, 캔디, 엑스터시(XTC) 등 다양하게 불린다.(국가정보원, 마약류 용어해설, 2003, pp.76-77). 복용 경험자에 따르면 부작용이 암페타민과 코카인 사용자에게서 발견되는 증상과 비슷하며, 사용기간 또는 사용 후 몇 주 동안 혼란, 우울, 수면문제, 약물갈망, 편집증 등 정신적 장애와 근육긴장, 구역질, 심약(실신), 오한 등 육체적 장애를 보인다. 심장박동과 혈압이 증가하므로 순환기 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히 위험하다.

32) LSD(Lysergical acid diethylamide)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발견되어 분리·가공·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1938년 스위스 산도스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개발 중 우연히 합성한 약물로서 LSD-25, Delysid로 불리기도 한다. LSD는 1온스(약 28g)로 30만회를 투약할 수 있을 정도로, 미량으로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며 통상 1회 복용량은 100~200 마이크로그램(μg)이며 효과는 8~10시간 지속된다. 무색·무취·무미로서 통상 분말로 제조되나 정제, 캡셀제 액체 형태로도 밀거래되며 미량을 각설탕, 과자, 빵 등에 첨가시켜 먹거나 우편, 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어 씹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33) 정대표, “한국의 마약문제의 실태와 대응”, 『동북아시아 마약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p.10

34) 합성 마약의 확산으로 후진국 공급, 선진국 소비 구조가 깨지고 동남아 등지에서 수요가 늘고 있으며 수요 연령층도 낮아지고, 아시아의 중국, 인도, 미얀마, 북한, 유럽의 네덜란드 등이 합성 마약의 주요 공급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마약시장의 변화에 대하여, 유엔 마약통제 범죄예방국의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국장은 “우리는 마약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남반구 빈국이 생산하고 북반구 부국이 소비하는 기존 시장구조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5, pp.33-34

〈표 2-6〉 외국인 마약류 국가별 밀반입 현황

(단위: g)

구 분 마약류별	국 가 별	2002			2003			2004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메스암페타민	중 국	28	68,585	31,256	22	57,318	57,318	16	6,409	6,167
	일 본	1	500	500	2	141	141	0	0	0
	필 리 핀	1	0	0	6	1,468	1,468	18	3,698	3,188
	소 계	30	69,085	31,756	30	58,927	58,927	34	10,107	9,355
코 카 인	브 라 질	0	1,170	1,170	0	0	0	0	0	0
	미 국	0	0	0	2	905	905	5	10	9
	소 계	2	1,170	1,170	2	905	905	5	10	9
헤 로 인	방글라데시	2	1,077	1,077	0	0	0	0	0	0
	베 트 남	0	0	0	0	0	0	1	10.4	10.4
	불 상	0	0	0	1	7	7	0	0	0
	소 계	2	1,077	1,077	1	7	7	1	10.4	10.4
생 아 편 (아 편)	이 란	0	0	0	0	0	0	2	25,007	807
	태 국	0	0	0	1	12,500	12,500	1	656	656
	중 국	0	0	0	0	0	0	1	1	1
	캐 나 다	0	0	0	1	200	100	0	0	0
	소 계	0	0	0	2	12,700	12,600	4	25,654	1,464
대 마 초 (대 마)	중 국	1	238	238	0	0	0	1	6,413	6,413
	미 국	5	64	55	8	214	138	16	841	517
	캐 나 다	0	0	0	3	236	236	0	0	0
	남 아 공	6	137,500	137,500	0	0	0	0	0	0
	러 시 아	0	0	0	0	0	0	3	91	91
	태 국	0	0	0	0	0	0	3	61	61
	호 주	1	5	5	0	0	0	0	0	0
	나이지리아	0	0	0	2	15,000	15,000	2	3,750	3,750
	방글라데시	0	0	0	1	76	76	0	0	0
	소 계	13	137,807	137,798	14	15,526	15,450	25	11,156	10,832
해 쉬 쉬	미 국	0	0	0	0	0	0	1	0.4	0.4
	러 시 아	0	0	0	0	0	0	2	19	19
	인 도	0	0	0	0	0	0	1	11,040	11,040
	네 팔	1	2,000	2,000	0	0	0	0	0	0
	브 라 질	1	260	260	0	0	0	0	0	0
	소 계	2	2,260	2,260	0	0	0	4	11,060	11,060
엑스터시(정)	러 시 아	1	38,637	38,637	0	0	0	1	512	512
	캐 나 다	2	549	49	2	745	745	0	0	0
	미 국	1	32	9	8	289	162	6	78	78
	태 국	2	660	0	0	0	0	1	3	3
	프 랑 스	0	0	0	0	0	0	1	19,675	19,675
	네덜란드	1	54	39	0	0	0	0	0	0
	중 국	0	0	0	1	2000	876	0	0	0
	소 계	7	39,932	38,734	11	3,034	1,783	9	20,268	20,268
엘에스디(정)	캐 나 다	0	0	0	1	900	900	0	0	0
야 바(정)	태 국	0	0	0	1	380	380	0	0	0

출처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5, p. 129

넷째, 외국인 마약사범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다. 매년 급증하는 외국인 마약사범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마약거래가 점 조직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마약남용자들이 대부분 불법체류자들이어서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에 2차적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외국인 마약사범은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8년도 IMF체제로 인하여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일시 출국하자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이다가 1999년도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00년도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³⁵⁾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범죄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는 다음과 같은 언론 보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전략)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마약복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사는 데서 오는 외로움과 불법체류에 따른 불안감 등 때문에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마약거래가 점 조직망을 통해 이뤄지는 데다 대부분 불법체류자들이어서 단속도 쉽지 않아 자칫 2차범죄까지 우려되고 있다. (중략) 외국인 노동자들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려 마약이나 환각제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여기에 불법체류로 인해 "언제 잡혀 고국으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한몫 한다. 특히, 쪽방에서 집단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한명만 마약을 해도 공범이 되기 쉬운 환경에 처해있다.(출처 : 경향신문 : 2004/09/20)

35) 외국인 마약류범죄는 1999년 23명, 2000년 26명, 2001년 82명, 2002년 99명, 2003년 120명, 2004년 218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국적별(2004년 기준)로는 러시아가 가장 많고, 필리핀, 미국, 중국, 일본 등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04, p.282)

〈표 2-7〉 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류범죄 단속 현황

(단위: 명)

구 분 국 가	2000	2001	2002	2003	2004
합 계	23	70	88	86	203
미 국	11	15	28	14	15
이 란	3	20	13	29	59
태 국	3	5	8	3	1
남 아 공	2		5		
나 이 지 리 아			5	6	4
중 국		8	4	3	35
캐 나 다	1	1	3	8	11
우즈베키스탄		1	3	2	
일 본		4	2	2	4
방글라데쉬		4	2		
대 만			2	1	2
호 주		1	2		4
러 시 아		1	1	13	42
영 국			1		
카자흐스탄			1	4	2
네 팔			1		
브 라 질			1		
필 리 핀		7			15
파 키 스 탄	1	1			
가 나		1			6
인도네시아		1			
잠 비 아	1				
모 잠 비 크	1				
뉴우질랜드					2
멕 시 코					1
말레이시아					
페 루				1	
불 상			6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5, p. 137

다섯째, 조직폭력배의 마약류범죄에 대한 개입이다. 지난 90년에서 '범죄와의 전쟁36)' 이후 우리나라 3대 조직폭력 패밀리는 거의 와해상태다. 범서방파의 김태

36) 1990년 10월에 선포된 '범죄와의 전쟁'의 가장 큰 발단은 1989-90년 사이에 갑자기 증가한 인신매매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누그러트리려는 목적에서 취해진 수단이었다. 당시 사회적 열풍처럼 번진 인신매매라는 신종범죄는 원래 기존의 조직범죄단에 의해 자행된 것이 아니라 소규모 범죄단이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틈타 나타난 일종의 전염성 범죄행위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의 목표는 전국 10대 폭력조직의 보스 등 50여명을 공개 지명수배 함으로서 조직범죄단에 집중되었다.(조성권, "권위주의의 정권하에서 한국조직범죄의 성장원인", 「형사정책연구」 제34호, 1998. p.181)

촌, 양은이파의 조양은, OB파의 이동재, 칠성파의 이강환 등 두목들이 현재 수감 중이거나 해외도피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9년 말경 이들의 방계 및 군소조직들이 조금씩 꿈틀거리며 전국적 규모로 성장하려는 조짐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이권개입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과는 '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갈취형' 또는 '기생형'에서 스스로 각종 업소와 기업체를 운영하는 '자생형' 또는 '기업형'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 범죄조직과 연계한 마약류의 밀조, 밀수 및 밀매를 통하여 조직의 주요 자금원을 확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³⁷⁾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001년 8월 중국에 거주하는 우모씨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kg을 밀수한 뒤, 서울·부산 등지에서 판매한 혐의로 동대문 파 행동대장 서○○, 박○○를 구속한 바 있으며, 2003년 9~10월 미국에서 제조된 필로폰을 국내 밀반입한 후 재미교포 출신 판매책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미국 내 한인폭력조직 LGKK(Last Generation Korean Killer) 두목 출신인 신○○을 구속하기도 하였다³⁸⁾. 이와 같은 조직폭력배의 마약류범죄 개입원인이 다음 보도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전략)우리나라도 93년을 기점으로 떨어졌던 마약범죄가 95년 이후 다시 늘고, 사용 계층이나 연령층도 다양해질 정도로 마약시장이 성장했으므로 일본의 야쿠자, 홍콩의 삼합회, 대만의 죽련방 등 국제폭력조직이 국내폭력조직과 연계해 국내 시장을 뚫고 들어오려 한다는 지적이 있다. (중략)폭력조직이 마약에 손대는 것은 「필연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37) 마약류 범죄백서(2004)에 의하면, 1999년도부터 서울지역의 장안동파, 이글스파, 부산지역의 칠성파·당감동파·유태파·서면파, 대구지역의 동성로파·칠성파·대신동파·, 인천지역의 꿀망파·부평식국파, 천안지역의 송악파, 청주지역의 파라다이스파, 수원지역의 AP(4월의 불사조)파, 서산지역의 태양회파, 의정부지역의 신세븐파 등 지역적 폭력조직 일부가 마약류 밀수·밀매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대구지역 폭력조직인 칠성파, 당감동파, 유태파, 서면파, 대신동파 등 폭력조직은 일본의 야쿠자 등 국제범죄조직 및 국내 메스암페타민 밀수·밀매조직 등과 조직적으로 연계하여 메스암페타민 밀수·밀거래에 직접 개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 정보 제공자를 살해하는 등 보복범죄도 서슴치 않고 있다고 한다.

38) LA에서 활동하는 LGKK 등 폭력조직은 총기류 등을 소지하고 유흥가에서의 이권 다툼은 물론 폭력조직간의 세력다툼 뿐만 아니라, 각종 강력범죄를 일으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일부는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후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한국에서 범죄조직화를 꾀하고 있다.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현지에서 필로폰 1kg의 시세는 1500만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이고, 4×6배판 책 크기에 불과한 이 정도 양을 국내에 들여오면 가격은 4, 5배 뛰어 도매가로도 최소 8000만원에서 1억 원이 된다. 따라서 한건만 하면 몇 천만 원을 쉽게 거머쥘 수 있다는 계산이다.

출처: <http://www.donga.com>, 1997/11/27

그리고, 최근 조직폭력배 개입 마약류 밀매조직의 특징은 과거 조직원 상호간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점조직’ 형태에서 탈피하여, 단계별 비밀성은 유지하면서도 각 단계별로 하부 폭력조직원을 마약류 유통에 관여시키고, 심지어 전문 마약밀매업자와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마약류를 유통시키는 등 그 판매조직 및 수법이 조직화 되가는 점을 들 수 있다³⁹⁾. 또한 타인명의의 은행 온라인 계좌를 이용하거나, 구매자 명의의 통장 및 직불카드를 받아 그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송금 받은 후, 소포 및 고속도로 수화물편이나 오토바이 택배(퀵서비스)편으로 배달시켜 수령하게 하는 등 마약거래 수법에서의 지능화·전문화를 꾀하고 있다.

〈표 2-8〉 조직폭력배 마약류범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구 분	전체 마약류사범	조직폭력배 마약사범	점유율(%)
2000	10,304	17(13개 파)	0.2
2001	10,102	54(28개 파)	0.5
2002	10,637	49(32개 파)	0.5
2003	7,546	6(5개 파)	0.08
2004	7,747	50(35개 파)	0.6

출처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5, p. 144

39) 미국의 경우 코카인이 최대 남용대상 마약으로 남미출신 범죄조직들이 멕시코 국경을 통한 육로 및 카리브 해 연안을 통한 해로를 이용하여 미국 내로 코카인 및 헤로인을 유통시키고 있으며, 특히 멕시코 범죄조직들은 코카인, 헤로인뿐만 아니라 뉴욕을 중심배급지로 하여 메스암페타민 및 대마초 밀수, 밀매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한편, 기존 코카인은 미국 내 밀반입 대부분이 콜롬비아의 코카인 카르텔에 의해 장악되었으나 최근 멕시코 마약조직이 멕시코나 카리브 해 지역 운송조직을 이용하여 미국 남서부나 동남부지역으로 대량의 코카인을 반입하고 있고, 이후 판매 일선에서는 흑인갱단이나 도미니카, 쿠바, 자메이카 등의 중미출신 범죄조직이 관여하여 살인, 무장 강도, 폭행 등 실력행사를 통해 시장관매를 독점하고 있다. 또한 미국 내 메스암페타민 공급은 주로 오토바이 갱단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멕시코 범죄조직들이 도매수준의 메스암페타민 공급 및 배급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표 2-9〉 조직폭력배 마약류범죄 유형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 유형별	합 계	밀 조	밀 수	밀 매	투 약	소지 (기타)
2000	17 (100)	0	0	3 (17.6)	12 (70.6)	2 (11.8)
2001	54 (100)	1 (1.9)	2 (3.7)	14 (25.9)	34 (63.0)	3 (5.5)
2002	49 (100)	0	2 (4.1)	23 (46.9)	24 (49.0)	0
2003	6 (100)	1 (16.7)	0	2 (33.3)	3 (50)	0
2004	50 (100)	0	3 (6)	15 (30)	27 (54)	5 (10)

출처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5, p.144, 주) ()는 구성비,

여섯째, 미성년자의 마약류 사용현상이다. 대검찰청 국가마약퇴치전략(2001)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마약류범죄는 외국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로, 미성년자의 마약류사범은 1994년도 134명에서 1999년도 50명, 2000년도에 30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최근 물질주의 및 향락·퇴폐풍조의 심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한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상실과 IMF 경제난으로 인한 가정파탄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의 가출과 비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을 이용한 윤락이나 유흥업소 경영 등 불법영업이 확산되고 있어 미성년자들의 마약류 사용 및 판매중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⁴⁰⁾

아직까지는 청·장년층 마약류 사범이 심각한 실정인 바 2004년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생산·근로계층인 20~40대가 78.1%(전년도 79.9%)를 차지하여 청·장년층이 마약류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장래 국가의 초석이 될 미성년자의 마약류범죄에의 관련성은 우리사회 또는 국가 전체가 마약류로 병들어 가는 우려 점을 내포하는 상징적인 징표를 제공하는 것이다.

40) 미국의 경우, 보건부(2002 National Household Survey on Drug Abuse)보고에 따르면, 2000년 마약류남용자수는 1,400만 명으로 이 중 약 500만 명은 중독된 사람이며 17세 이하 청소년도 110만 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대마 남용자 1,200만 명, 코카인 남용자 120만 명, 크랙남용자 26만 명, MDMA남용자 100만 명, 헤로인 남용자 13만 명).

〈표 2-10〉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연령별 연도별	15~19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 계
2000	30 (0.3)	1,658 (16.1)	4,155 (40.3)	2,697 (26.2)	595 (5.8)	708 (6.8)	461 (4.5)	10,304 (100)
2001	24 (0.2)	1,866 (18.5)	4,111 (40.7)	2,667 (26.4)	560 (5.5)	429 (4.2)	445 (4.4)	10,102 (100)
2002	79 (0.7)	1,903 (17.8)	4,350 (40.8)	2,796 (26.2)	577 (5.4)	527 (4.9)	441 (4.1)	10,673 (100)
2003	37 (0.5)	1,123 (14.9)	2,804 (37.2)	2,098 (27.8)	608 (8.1)	649 (8.6)	227 (3.0)	7,546 (100)
2004	18 (0.2)	958 (12.4)	2,683 (34.6)	2,413 (31.1)	696 (9.0)	766 (9.9)	213 (2.7)	7,747 (100)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2005, p. 172

마지막으로, 대마초⁴¹⁾에 대한 비범죄화 논쟁의 대두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 금기시 해오던 대마초에 대한 논쟁이 공론의 장으로 나왔다. 2004년 10월 21일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대마 처벌 관련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실이 도화선이 된 것이다.⁴²⁾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문화 관련 진보단체인 '문화연대'등은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김부선씨가 낸 위헌 신청을 지지하면서, 2005년 3월 2일 “한국약물남용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마 흡연이 환각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며 미국과 프랑스의 연구에서는 중독성도 담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마 비범죄화 요구 선

41) 대마초(Marijuana, Cannabis, Happy Smoke)는 대마의 잎과 꽃 부분을 건조하여 담배형태로 흡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THC라는 환각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약물학상 환각제로 분류된다. 대마는 마(麻) 또는 삼이라고도 불리며, 특히 재배삼의 암그루 꽃이삭과 잎에서 얻은 것을 간자(Ganja), 야생삼에서 얻은 것을 마리화나(Marijuana)·브항(Bhang)이라 한다. 대마는 흥분작용과 억제작용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환각제로 분류된다. 소량의 대마를 흡연할 경우 순한 흥분제의 효과가 나타나고 다량을 흡연하면 공중에 뜨는 기분, 빠른 감정의 변화, 환상·환청 효과가 나타나며 지나치게 많은 양을 흡연할 경우에는 중독성으로 인해 정신이상 상태를 유발하기도 한다.(국가정보원, 마약류용어해설, 2003. p.13~14)

42) 김부선씨는 2002년 1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승용차와 아파트 등지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만3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에 대마 처벌 조항이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2005년 4월 29일 수원지방법원(000판사)은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화,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과잉 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김부선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을 ‘각각결정’ 하였다.

언문'을 통해 “대마초는 개인의 취향이자 기호로 사적 선택의 영역”이라며 “대마초 흡연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아무런 대안 없이 무조건 합법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개실험 등 합당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마를 남용하면 정신분열증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으며, 유엔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해 제조, 유통, 사용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검찰도 “대마의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 성분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중단할 경우 수면장애나 음식섭취장애 등의 금단증상이 일어나는 중독성이 있으며, 대마사범은 환각성이 더 큰 히로뽕 사범이 되기 쉬워 초기 억제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⁴³⁾

대마초에 대한 비범죄화냐? 불법화냐? 는 수십 년간 지속적인 논쟁의 장을 경험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살펴보고, 벤치마킹함으로써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그리스, 스위스 등은 대마초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반면에, 영국,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스페인, 벨기에 등은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대마초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관대한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스위스와 함께 역내 국가들에서 대마초를 구입하거나 흡연하기 위해 찾아오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⁴⁴⁾⁴⁵⁾

43) 동아일보, 2005/03/03

44) 스위스는 지난 30여 년 간 대마초를 불법화하고 있으나 법집행이 칸톤(주) 정부에 이관돼 있어 단속은 대단히 느슨한 편이기 때문에 대마초 흡연 인구가 최근 수년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2배나 급증하였다.

45) 대마류 남용은 유럽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①미국의 경우 2003년 기준으로, 15세 이상 미국 인구의 약 13%가 대마초를 남용하고 있는데 전체 마약류남용자의 80% 이상을 점유하며, 청소년층 사이에 대마초 남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내 소비되는 대마초는 대부분 외국에서 밀수되고 있으며 주요 공급국인 멕시코, 태국, 캄보디아 등지에서는 밀반입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미국 내에서는 전 지역에 걸쳐 산발적으로 재배되고 있고, 주요 대마재배지는 캘리포니아·하와이·켄터키 및 테네시 등 4개 지역이며 실내 대마재배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②태국의 경우 세계 최대 아편 생산지인 ‘황금의 삼각지대’가 태국 북부 고산지대에 접해있어 마약제조, 판매, 투약 등의 문제가 국가발전에 장애 요인이 되어 왔으며 1990년 후반까지는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근국가에서 생산된 대마초를 항공, 육로 및 해상교통이 발달한 방콕으로 밀반입하여 일부는 자국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재수출하였는데, 2000년 이후에 이르러서는 대마초 밀매보다는 파키스탄 및 네팔로부터 밀반입된 해쉬쉬를 싱가포르, 스위스 등 유럽국가로 재수출하는 경유국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③호주의 경우 대마는 성인인구의 약 1/3가량이 사용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호주에서 가장 널리 남용되고 있

프랑스는 대마초 흡연을 허용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유럽 국가 중 영국에 이어 대마초 흡연율이 두 번째로 높으면서도 법률적 제재는 매우 엄격하다.⁴⁶⁾ 15~34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유럽연합 약물 및 마약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는 영국(12.4%)과 프랑스(11.9%)가 오히려 대마초 소비율이 가장 높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르몽드, 리베라시옹 등 프랑스 언론은 “위선을 벗고 현실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며 대마초 비범죄화(depenalization)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마초가 이미 대중화된 현실을 인정하고, 대마초 흡연을 비범죄화함으로써 그동안 양산된 온갖 다른 범죄들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는 반면에, 프랑스의 ‘관문이론’⁴⁷⁾의 기수격인 가브리엘 나하스는 ‘연한 마약은 없다’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칸나비스는 중독성·의존성이 강하며 대마초에 들어 있는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이 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대마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

유럽국가에서 최근 대마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엿볼 수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네덜란드의 경우, 2004년 8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정책백서’를 통해 대마초가 상용자와 전체 사회 모두에 “무해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대마초의 길거리 매매와 대마초 관광, 재배를 억제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학교 부근이나 국경지역에서 대마초 흡연을 미끼로 영업하는 커피숍을 계속 줄여나가고 청소년 흡연을 억제하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벌이며 불법 재배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스위스의 경우, 2001년 12월 스위스 상원에서 개인들의 대마초 흡연을 합법화하고 제한적인 거래를 허용하되 계속 불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스위스 하원이 거부해 합법화를 무산시키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청소년층의 대마초

는 마약류로서 자체 생산되거나 파푸아뉴기니 등 태평양 군도에서 반입되고 있고, 최근 수중 재배한 대마에서의 THC 함량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전통재배 방식보다는 이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수중 재배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46) 1970년 제정된 대마 관련법에 의하면, ‘대마초 흡연’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3천 유로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47) ‘의사국립아카데미’의 대마초 위해론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으로, ‘칸나비스 흡연자가 모두 헤로인 복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성 마약 복용자들의 대부분은 칸나비스로 처음 시작했으니 칸나비스부터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다.

흡연을 억제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1965년부터 1967년간 대마초 사용을 허용했던 스웨덴의 경우에는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자 1969년부터 다시 통제, 대마에 대해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대마초 논쟁이 우리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게 된 요인으로서, 대마초 자체의 유해성 여부 논란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대마초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나 ‘제보 수사’ 관행 등의 문제도 크게 작용했다고 볼 때 이러한 사안을 제대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3장 경찰의 통제방안

한반도 주변국의 마약류 범죄 동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 실태와 분석을 통하여 사회전반적인 마약류 남용의 보편화 현상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최근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 IMF체제 이후의 스트레스 증가, 퇴폐풍조의 확산, 향락의 일반화로 인하여 제기되는 사회문제인 것이다. 사회문제로 대두된 마약류의 등장은 우선 마약을 남용하는 계층이 청소년, 가정주부, 회사원, 농어민, 대학교수 등 거의 모든 사회계층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는 것과 마약류의 제조·밀매·밀수 등으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이익과 직결된 관계로 조직폭력배와 연계된 제2, 3의 범죄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마약을 복용하는 자신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근로의욕의 상실에 따른 생산성 감소와 중독자 치료 및 관리를 위한 국고지원으로 인해 국가사회를 황폐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한다. 환각증상이나 금단증상 또는 마약류 구입목적으로 강력범죄나 무동기범죄를 유발하며, 나아가 국제적인 돈세탁(money laundering)에 따른 마약유통을 통하여 국가 간 분쟁소지를 발생시킨다. 최근 이러한 마약류범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형사정책연구원의 신의기 박사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전략)최근 우리나라의 마약수요확대와 함께 조직범죄집단의 개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외국 마약조직도 침투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마약의 반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마약의 반입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일본, 동남아 등 국제적으로 연계된 마약밀매 조직이 적발되고 있는 등 외국마약조직의 국내침투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출처 : 신의기, “외국 마약조직의 국내침투 실태와 차단 방안”, 「국제범죄 대응정책 연구논총」, 창간호, 2005, p.130)

우리나라 경찰이 당면하는 문제점은 소프트·하드웨어, 국·내외 공동대응체제, 치료와 재활 등 측면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미흡한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차원에서 마약류 문제에 대한 관련기관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마약류 관련 종합적인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2001년 12월부터 국무총리 소속을 설치·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성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미비하게 보인다.⁴⁸⁾

현재 한국의 마약단속은 검찰, 경찰, 관세청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수사권은 없으나 국제정보수집의 강점을 활용하여 정보수집을 통한 마약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경우 마약류사범의 조직체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광역화·조직화된 마약류사범에 적극 대처를 위해 1990년 마약류사범에 대한 정보 전산화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1996년에는 마약류사범의 사진, 필적, 지문, 범죄사실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검찰 마약류사범 영상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중에 있고, 마약류사범카드 70,000여매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조직특성상 그리고 신분상 검사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마약단속의 지휘부 선상에서 계속 동일한 업무에 전문성을 지속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마약조직범죄의 경우 조직의 상층부까지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법들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전문가인 검찰에서 담당할 영역이기 때문에 검찰은 앞으로 이 부분에 더욱 전념할 필요가 있다.⁴⁹⁾

이에 비해 경찰은 전국적인 조직력과 활발한 대민접촉을 바탕으로 24시간 가동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마약류 남용사범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최근 마약류 남용사범에의 색출에도 검찰보다 매우 유리한 조직적 특성을 갖고 있다. 즉 국내의 남용사범에 관한 한 검찰보다 첩보나 정보접근 차원에서 유리한 입장이다. 특

48) ‘마약류 대책 협의회’는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1급 공무원 14인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학계·언론계·시민단체 인사 5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를 두고 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 소속으로 수사 단속 정보 분과위원회와 치료 재활 홍보 교육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후, 2006.4월까지 6차례 정도만 회의가 개최된 상태로 활동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49) 신의기, “외국 마약조직의 국내침투 실태와 차단 방안”, 「국제범죄 대응정책 연구논총」, 창간호, 2005, pp.171-172

히 최근 마약류 남용사범의 거점은 테크노바, 라이브카페, 대학가, 학원가, 요식업 및 유흥업소 주변, 외국인 노동자 집단거주지역, 공단지역의 별집이나 자치촌 등이므로 이들 주변을 순찰하거나 유흥업소 지도단속을 통하여 광범위한 첩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⁰⁾

이와 같은 이점을 지닌 경찰조직을 주축으로 현실적으로 직면해있는 제반 문제점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21세기 마약류범죄 통제방안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석할 수 있다.⁵¹⁾

제1절 수사권 조정을 통한 소프트웨어 강화

우리나라의 현행 수사구조는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이고, 경찰수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근거조항마저 불비한 비정상적인 형태이다.⁵²⁾ 즉 법적으로 경찰은 검사의 지휘가 없이는 수사의 개시 및 진행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검사의 독점적인 수사권을 정점으로 경찰과 검찰이 상명하복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비민주적인 구도로 이루어져 있다. 현행 수사구조는 해방 직후의 사회혼란기에 탄생한 채로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규문 주의적 검찰사법으로 평가되는 1922년 일본의 군국주의 시대의 형사소송법의 수사체계를 그대로 계수하여 유지하고 있다.⁵³⁾ 물론 민주화된 수사구조로의 개혁시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끝내는 무산되었다.

미군정기에는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이 부여되기도 하였으나, 검찰 등의 반발로 인해 일제 강점기의 수사구조로 회귀하였고,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도 수사와 소추를 분리하는 미국식의 수사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으나 당시의 혼란한 현실여건 등으로 포기하였다.⁵⁴⁾ 권위주의 시대를

50) 전대양, "신종 마약류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p.110

51) 한국 마약류범죄의 문제점에 대한 경찰의 통제방안이 논문작성의 목적임을 감안하여, 이하에서는 현행 마약류범죄의 문제점을 한국경찰이 직면하는 범위 측면으로 포커스를 맞추기로 한다.

52)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는 ①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경사, 순경은 사법경찰관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

53) 일본의 舊 형사소송법은 검찰을 군국주의 유지의 첨병으로 활용하기 위해 검찰권을 극도로 비대화시킨 형사사법체제로 '검찰과소'내지 '규문 주의적 검찰사법'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小田中聰樹, 刑事訴訟法の史的構造, 1986, p.197)

거치면서 검사 지배적 수사구조가 더욱 강화되어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보조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적 입장이며, 현행법상 ‘경찰의 검사에의 복종의무(검찰청법 제53조), 검사의 징계·해임·해임요구권 등의 통제장치(검찰청법 제54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0조)’ 등의 규정은 다수설에 대한 보증내용이자 경찰의 검찰에 대한 예측상태를 절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⁵⁴⁾ 이러한 현행 검사 지배적 수사시스템에서 야기되는 한국경찰의 마약수사상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크게 여섯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정당한 경찰수사에 대한 마약류 사범의 반발가능성 문제이다. 경찰에는 수사권이 없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검사가 수사권자 아니냐! 너희들이 뭘데 사람을 함부로 잡으려 하느냐”는 등 현장 경찰관의 법집행 과정에서 공권력에 대한 저항과 무시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건관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권한도 없는 당신에게 조사받을 필요가 없으니 빨리 검사에게 송치나 하라”며 수사관에게 소리 지르거나 욕하는 모습은 수사진행상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인권(人權)을 동시대의 최우선 가치로 표방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은 채, 마약류 사범을 통제 하려는 경찰수사는 제도상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둘째, 경찰수사의 부실화 및 국민 불신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수사경찰 스스로도 자신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며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의식의 형성과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끝까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질 수 없는 현행 수사구조 하에서는 경찰조직 내부의 교양과 지도로 책임수사체제 확립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수사경찰관은 적극적으로 수사의지를 갖기 보다는 검사가 시키는 대로만 수사하여 서둘러 사건을 송치하고 나면 자신의 할 일은 다했다는 의식이 팽배되어 경찰수사의 부실화를 조장하고, 민원인들에게도

54) 당시 형사소송법 제정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엄상섭 위원과 한격만 검찰총장의 발언에 이와 같은 관점이 피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5) 지방경찰청 차장급인 경무관 이하가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와 상명하복 관계에 있고, 수사와 관련되지 않는 경찰업무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조직 전체가 검찰에 예속되어 있다고 보인다.

“경찰은 아무 권한이 없고 검사에게 빨리 송치나 할 테니 검사에게 이야기하라”는 등의 책임회피성 자세를 견지하여 경찰수사에 대한 불신을 불러 오고 있는 실정이다.⁵⁶⁾

셋째, 수사 지휘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경찰간부의 사기저하이다. 경찰수사에 대한 지휘체계가 검사의 지휘와 경찰수사간부의 지휘로 이원화되어 현장상황에 정통한 경찰수사간부가 검사의 지휘를 의식하여 적극적·창의적 수사지휘를 주저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서 경찰수사간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수사지휘가 필요한 경우에도 검사지휘와의 충돌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일단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보라”는 소극적 행태가 조장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경찰수사간부가 의욕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던 중 검사의 지휘와 상충될 경우 수사간부의 지휘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 경찰내부의 지휘체계마저 무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수사상 비능률과 인권침해 사례의 발생이다. 현장진입이 불가능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지시나 배당사건의 수사 일정이 꼭 짜인 경찰관에 대한 출장 조사 지시 또는 “인상착의가 용의자와 비슷한 사건현장의 지역주민을 모두 조사하여 사건발생 당시 알리바이를 확인하라”는 등의 현장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검사의 부적절한 수사지휘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수사지휘의 부적절함을 항변하여도 “일단 검사가 지휘했으니 그대로 하라”고 하여 수사상 비능률과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다.

다섯째, 경찰수사의지의 무력화하는 검사의 자의적 사건지휘이다. 수사지휘과정에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정보를 파악하여 검찰 인지수사부서의 실적으로 삼는 ‘사건 가로채기’나 대형사건의 경우 영장을 반복 기각하거나 수사지휘를 빙미로 보완수사지휘를 반복하는 ‘사건 김 빼기’식 수사지휘를 하여 경찰수사의지의 무력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마약사범수사 등 경쟁관계에 있는 수사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으며, 인지수사실적이 검사의 고과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실적 면에서 경찰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통해 경찰수

56) 일본의 경우, 경찰이 제1차적 수사의 주체로 자리매김된 이후 경찰수사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사건담당자는 자신의 사건에 대해 송치 후는 물론 최종판결이 있기까지 나아가 수형생활을 마친 후 사회에 복귀한 이후까지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철저한 주체적 책임의식을 갖는 자세로 임하고 있어 국민들의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사례들이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 1】

충북청 마약수사대에서 2004년 11월 3일 필로폰과 대마흡연혐의로 구○○을 긴급체포 후 필로폰 투약사실만 인정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정보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긴급체포 승인과정에서 정보를 파악한 검찰마약반에서 피의자 신병을 빼돌려 필로폰 사범 3명을 검거한 사례

【사례 2】

인천경찰청에서 정보원의 제보에 의해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모발검사 등으로 피의자에 대해 필로폰 투약혐의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목격자 진술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후 재지휘 받으라.’는 수사지휘를 하여 시간지연으로 인해 신병확보 실패한 사례

【사례 3】

구속영장을 발부받기에 충분할 정도의 소명자료가 구비되었고 사안의 성격상 일단 신병을 확보하여 보강수사 및 공범수사 등 계속 수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완벽한 수준의 보강자료를 요구하는 수사지휘를 하여 신병확보 및 증거확보에 실패하게 한 후 검찰에 송치된 후 경찰의 부실수사를 검사가 직접 수사하여 대형사건을 인지한 것처럼 언론에 발표한 사례 등

검찰청 직원관련 수사나 사회 저명인사에 대한 수사 등 검찰의 관심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겠다는 일방적으로 사건이첩을 명령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여 경찰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비근한 예로 들 수 있으며,⁵⁷⁾ 이외에도 일선 경찰관들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전화상으로 송치요구를 받는 경우도 흔하다고 한다.

여섯째, 긴급한 수사사안에 대한 수사지연 및 인권침해 가능성이다. 신속한 수사지휘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검찰청에 사건서류를 접수하고 사건 접수 후 담당검사가 지정되어 수사지휘를 받기까지에는 일반적으

57) 이와 관련된 경우로, 2003년 3월 용산경찰서에서 범조브로커 수사를 위해 계좌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찰에서 계속 기각한 이후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이슈로 부각되자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수사하여 비리연루 혐의 검사를 징계한 사례와 2002년 10월 22일 대전지검 특수부 소속 직원 3명이 만취상태에서 행인과 출동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직접 조사하겠다는 사건을 검찰로 인계하도록 한 후 유사사례의 처리 관행에 비추어 구속수사 사안임에도 불구속 수사한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특히 야간 수사지휘에 있어 당직검사가 자리를 비워 신병지휘 등 긴급한 수사사안에 있어 수사지휘가 있기 전에는 수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수사지연 및 국민 불편 사례 발생한다.

마약류 투약 등과 관련하여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석방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석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석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부당한 구금이 계속되는 심각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⁵⁸⁾

폴뿌리 민주주의의 요람인 영국과 미국에서는 경찰이 수사의 주체이고, 검찰은 소추기관으로서 양 기관간이 서로 대등협력관계를 유지한다. 프랑스는 법원소속의 수사판사가 수사를 주재하고 있고, 검사는 주로 소추를 담당하며 경찰도 수사의 개시 및 진행권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나, 경찰도 수사 개시 및 진행권을 보유하고, 실제 수사는 경찰이 수행하고 있어 검사는 자체수사력이 없어 ‘손발 없는 머리’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 일본은 경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를 주도하고, 검찰은 보완적인 2차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으로서 양 기관이 대등협력관계를 유지한다. 각국의 수사권 구조를 개괄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3-1> 수사권 구조 모형

구별기준		검찰의 수사관여정도	
		적 음	많 음
검찰과 경찰의 관계	수평적	분권적 경찰주체형 (영국, 미국)	검경 합동형 (일본)
	수직적	검사후견적 경찰주도형 (독일, 프랑스)	제왕적 검사지배형 (한국)

출처 :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 수사구조개혁, 합리적인 수사권조정방향(2005.5.3)

58) 이외에도 변사사건 처리 시, 타살혐의 없음이 명백하여 검사는 검시조차 경찰관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사건담당자가 여러 종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검사의 지휘를 받는 동안 사체인도가 지연됨으로써 유족은 3일장을 치르지 못하는 불효를 저질렀다며 경찰을 비난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전 세계 어느 입법을 보아도 우리와 같은 사례는 찾아볼 수 없으며, 심지어 대륙법계인 독일과 프랑스조차도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는 실정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⁵⁹⁾ 독일의 경우 당초 초동수사에만 한정되어 있던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한의 법적인 범위가 2000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였으며, 프랑스는 1958년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사법경찰의 수사에 관한 일반근거 조항으로서 제12조 및 제14조를 신설하여 기존 입법의 흠결(lacune)을 치유한 조항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만 검사가 수사권(개시·진행·종결·영장청구)과 수사지휘권 모두를 독점적으로 보유하여, 수사구조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지는 오래전 일이다. 검찰이 소추기관과 수사지휘기관을 넘어 ‘직접수사기관화’ 하는 우리의 현실을, 프랑스 형사법학자(J. Pradel)가 주장한 “공소관은 당사자이다. 이러한 자격으로 소추의 권한은 그에 속하지만 이 때문에 수사행위를 하도록 놔두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중략) 시민들이 한사람에게서 소추 권한과 자신의 소추를 정당화할 것들을 수집하는 권한을 보게 된다면 모두 떨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대변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정치, 경제 뿐 아니라 법률, 서비스, 문화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 표준에 도달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사법서비스의 수준은 인권, 국가투명성 등과 함께 한 나라의 신인도나 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맞는 수사구조의 구축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직접적인 인지수사를 지양하면서, 경찰 및 세관 등에서 송치된 피의자에 대한 공작수사를 활성화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수사반을 편성·운영하는 검찰의 마약수사 역량에 비해, 독자적인 수사권이 없어 투약자 및 망원중심의 열악한 공작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의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토대를

59) 독일 형소법 제163조 제1항은 “경찰기관과 그 공무원은 범죄행위를 조사하여야 하며...<중략>, 또한 다른 법률이 경찰의 권한을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종류의 수사를 진행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프랑스 형소법 제14조 “사법경찰은 예심이 열리지 않은 경우, 형법규정을 위반한 범죄를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을 색출할 임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경찰의 수사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마련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크게 다섯 가지의 발전적 결과를 산출하는데 기여하는 수사권 조정은 필요하다고 본다.⁶⁰⁾

첫째, 민주적 수사구조의 기틀 마련과 국민 지향적인 수사 활동 촉진이다. 민주주의의 근본개념은 국가권력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사구조의 경우 더욱더 그러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이 공히 수사의 주체로서 상호간에 견제와 경쟁을 하게 되면,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수사 행위는 사라지게 된다.

둘째, 성역 없는 법집행이 가능해진다. 현재까지 검사가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해왔기 때문에 수사권의 자의적 남용의혹과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경찰에게도 수사권이 주어진다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게 되어 누군가를 비호하거나 권력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된다.

셋째, 수사가 더욱 공정·투명해 지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진다. 기존에는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더라도 검사의 지휘에 복종하여 수사한 것이었기 때문에 검사는 경찰에게 책임을 묻기 힘들었다. 그러나 경찰이 자신의 책임에 따라 수사를 하고, 검찰은 경찰의 모든 수사결과를 엄격히 검토·통제하게 되면 수사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지게 되고,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의 귀속이 확실히 이루어지므로 경찰과 검찰 모두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수사 절차의 간소화와 국민권의 보호에 충실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사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단순한 절차도 모두 멀리 떨어져 있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사건처리가 번잡하여 국민피해를 초래하였으나, 수사권이 조정되면 형식적인 수사 지휘절차가 사라지고, 불필요한 이중수사는 최소화되므로 신속한 수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의 국민의 목소리에 부합하는 판단·결정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현장의 정의’가 실현된다. 또한 검찰도 번잡하고 형식적인 수사지휘 업무에서 벗어나 본연의 업무인 수사적정성 통제와

60) 경찰의 수사권 조정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경찰수사의 일반적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경찰의 수사 주체성 인정(형소법 제195조 개정), ②검·경간 명령복종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형소법 제196조, 검찰정법 제53조 개정) ③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장치 확보와 인권보호 및 수사적정성 보장 ④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경합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장치 마련 등을 통하여 경찰의 수사권과 검사의 수사통제권을 합리적으로 조화·도모하자는 것이다.

인권보호 및 공소 유지에 충실할 수 있게 되므로 국민권익이 대폭 신장된다.

다섯째, 우리 국민도 일류경찰을 소유하게 된다.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을 알려면 ‘그 나라의 경찰을 보라’는 말이 있듯이 경찰수준은 국민 수준의 척도이다.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찰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선진 일류경찰을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다. 지배와 복종, 타율과 소극이라는 전근대적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선진 경찰이 탄생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열린 우리당 홍미영 의원을 대표로 하여 8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경찰수사주체성 인정’ 및 ‘검찰과 경찰 상호 협력관계’를 주요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하였으며,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을 대표로 하여 1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이와 유사한 골자의 형소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상태이다.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바램인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구조로의 조정은, 현행 검사의 수사권 독점과 경찰의 수사권 부재현상에 기인된 검·경간의 실질적 상명하복관계를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검·경간 수사권의 분점과 상호협력관계로의 민주 분권적 전환을 의미함과 동시에 마약수사 통제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핵심요소인 CPU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역할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제2절 마약전문인력, 예산 등 확보를 통한 하드웨어 보강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브레인(brain) 기능인 소프트웨어와 브랜치(branch)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하드웨어 분야가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야 함은 필수적인 요건이다. 우리나라 경찰에게도 수사권 조정 등과 같은 수사의 소프트웨어가 구축되더라도 이에 수반되는 마약수사 전담인력, 예산 지원 등의 하드웨어 측면의 지원이 없을 경우는 어린 아이에게 성인의 옷을 입히는 사례처럼 절름발이 형태의 마약수사 통제방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행 경찰구조에서 마약수사를 진행하는데 하드웨어 측면의 주요 문제점으로 제

기되는 마약수사 전문 인력 및 예산의 부족현상 등과 그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논해보기로 한다.

1. 수사경과제 도입 등 마약수사관 전문성 강화

전형적 조직범죄와 관련된 국제적 양상을 보이는 마약범죄 수사 차원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는 일반 수사요원 외에 전문요원이 필수적인데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 현재 경찰의 좌표이다. 그 동안 경찰은 마약수사가 아닌 일반수사문제에 있어서 수사전문화 및 자질향상 방안으로 직무보수 교육 강화는 물론 수사, 조사요원 경사, 경위, 경정계급을 특별 채용하는 등 대체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이들에 의해 수사력이 획기적이지는 못했다.

더구나 경찰의 마약류범죄 수사체제는 사실상 검찰보다 뒤지고 있다. 검찰의 경우 마약수사요원을 별도로 채용할 뿐만 아니라 전국 검찰청에 마약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및 수사요원을 확보하고 있고, 정보원이나 검거된 피의자들도 경찰보다는 검찰을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⁶¹⁾

한편,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되어가는 마약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의 경찰기관들도 경찰의 수사역량을 높이하고자 마약전담부서를 만들고,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경찰도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경찰교육기관에 마약류 범죄수사에 관한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전문화교육을 하고 있으며 마약류사범 검거에 대한 유공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 3월에 설치되었던 경찰청 마약지능과 마약계를 2002년 10월에 마약수사과로 확대 개편하고, 산하조직의 마약류 수사를 총괄할 수 있도록 인원을 보강하였으며, 2000년 11월에는 서울청 등 7개 지방청별로 종전의 기동수사대 마약전담반 지정을 해제하고 마약계를 설치하여 수사 인력을 종전보다 2~4명씩 보강함과 동시에 전국 120개 1급지 경찰서에 마약전담반을 설치하였다. 2003년 2월 효율적인 마약수사 체계로 전환을 위해 경찰서 마약전담반 120개를 86

61) 전대양, "신종 마약류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p.111

개로 소수 정예화하고, 각 지방청 마약계 인력을 2~4명을 보강하였다(90명→121명).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약류 범죄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경찰은 인권보호를 최상의 목표로 삼아 수사경찰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수사경과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2004년12월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수사경과를 신설하고, 수사경과자로 하여금 수사부서에서만 근무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수사경찰은 경찰조직에 적응을 마친 재직 자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범죄수사 관련 기능 소지자 등을 외부로부터 신규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하여 '수사관 양성 교육'을 실시한 후 시보수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1년의 시보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 수사경과를 부여한다. 또한 수사경과내에서도 「죄종별 전문수사요원」으로 세분화하여 동일한 죄종수사팀에 계속 보임할 예정이다.

마약수사 분야에서도 21세기 치안현실에 걸맞는 현장실무 중심의 직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현실 대처 능력을 높이고자 마약류 범죄수사 전문 과정을 운영한다. 수사경과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죄종별 전문수사팀제의 전면적 시행을 위하여 조직구조의 재개편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조직 재편성에 대한 기본계획으로 첫째, 1급지의 수사과 및 형사과 미분과 59개 경찰서 중에서 사건처리와 관리업무가 많은 37개 경찰서를 수사과와 형사과로 분과 둘째, 계(係)를 폐지하고 '팀'제를 도입하여 죄종별로 업무를 분장 셋째, 지원부서는 과학수사팀과 수사지원팀으로 통합하여 재편성한다는 내용을 설정하고 있다. 전문수사팀 체제로의 조직전환은 경찰서별 수사 인력, 사건처리 건수, 근무편성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 죄종별 전문수사팀 수와 팀 간의 기능을 설정하여 지역특성에 맞게끔 탄력성 있게 조직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사2계와 조사계를 통합하여 죄종별 팀으로 재편한 '지능수사팀', 형사계와 강력계를 통합·재편한 '강력수사팀', 수사1계와 형사관리반을 통합한 '수사지원팀', 전산실과 감식 반을 통합한 '과학수사팀', 유치장 관리 및 호송 담당은 '유치관리팀'으로 확대·재편하는 방안이다.

「계」단위에서 「팀」제로의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조직편제와 업무분장

의방식변경에 따라 수사팀별 적정인력이 배치되도록 정확한 업무분석에 따른 인력재배치를 통하여 수사 팀 간 업무형평성을 유지하고, 수사전문성과 업무효율성이 동시에 제고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구속 및 약식기소의견 송치사건 등은 팀장의 책임수사 체제를 구축하고, 지방청장이 정하는 구속 및 중요사안 등은 과장 및 관 서장에게 보고·결재하는 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더불어 종전에 계장이었던 팀장은 선임 팀장으로 보하고, 경찰관서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과장 부재 시 직무대리와 선임팀장이 소속한 수사팀 그룹에 대한 업무조정권 및 지휘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수사팀장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2004년 10월에는 전국 14개 지방경찰청의 마약계를 1~4개의 수사팀으로 구성된 마약수사대로 확대 개편하여 인력을 보강하고(121명→216명), 경찰서는 단순마약사범 단속을 위한 수사요원 761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마약수사대의 발족은 마약범죄의 광역화·지능화·조직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사경과제 도입에 따른 최종별 전문체제 확립을 위하여 지역별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투약자 위주에서 공급·판매책 및 제조책 등을 우선 검거하고, 단발성 위주에서 장기적 수사를 진행하려는 방침 하에 설립되어 마약수사에 대한 과거의 경찰통제방안과는 다른 업그레이드 된 의미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05년 4월 경찰청 마약수사과장을 회장으로 경찰청 마약수사과, 서울청 마약수사대, 관세청 마약담당 등 총20명을 회원으로 ‘마약수사발전연구회’를 창설하여 마약수사와 관련한 테마별 논의와 상호 교류증대를 통한 마약수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⁶²⁾

그리고 현행 광역수사대 체제를 2007년부터 ‘광역수사단’으로 전환하는 ‘한국적 광역수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적 광역수사 시스템이란 각 지방청의 관할지역을 1~5개 권역으로 크게 나누고 각 권역별로 지역수사대를 구성하여, 살인·납치·연쇄성 강도 등 주요 강력사건을 권역별로 묶어 수사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수사대는 각 경찰서 강력팀 2~4개를 뽑아 구성하며 수사대장에는 5년 이상

62) 마약수사발전연구회는 회원 간의 실시간 정보교류를 통한 마약수사의 발전을 위하여 인터넷 카페(challenge7.cyworld.com)를 운영하고 있다.

수사경험이 총경급과 경정급을 배치한다.

광역수사단 체제가 구축되면 기존의 광역수사대는 기획수사만을 전담하는 ‘중앙수사단’과 지역의 강력범죄를 전담하는 ‘광역수사단’, ‘마약수사단’ 등 3개 부서로 확대 개편된다. 특히 중앙수사단은 각 지방청 수사 인력인 수사부 등과 통합될 계획이어서 사실상 검찰처럼 기획수사를 전담하는 거대한 수사팀이 꾸려지는 셈이다. 이러한 광역수사단은 내년 3월 울산·전남·충북 등 3개 지역에서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최근 기동화·광역화되는 강력범죄에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마약수사를 위한 조직의 개편과 전문 인력의 강화를 위한 수사경과제의 도입은 한국이 마약류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우리나라 경찰은 수사관 라이선스제를 도입 추진하여 체계적으로 수사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변호사 자격자 등 법률전문가와 검시관·범죄분석관 등 전문수사인력을 지속 충원하여 전문수사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그리고 종합적·전문적 수사교육체제를 갖춘 경찰수사교육원을 신설하여 수사전문가의 산실로 운영하는 한편, 과학수사센터 확대 개편으로 과학수사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식 공유 D/B를 설치하여 실시간 수사지식 공유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은 전문적인 수사시스템 정착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마약수사 경찰은 일부 요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약리작용 및 마약류성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단계에 있고 제조사범과 국내외에 관련되는 수출입 유통사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투약자 검거 수준에 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수사가 불가능한 마약류 사범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 사범별 태양에 걸맞는 전문화된 교육을 통한 수사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21세기 국제화·지능화·기동화되고 있는 마약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⁶³⁾같은 선진수사기법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63) 플리바게닝은 범죄피의자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범죄를 자백하거나, 조직범죄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제도로써, 유죄협상제도와 비밀정보원제도를 들 수 있다. 비밀정보원제도는 미국, 캐나다 등 영미법제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다.

2. 적극적 예산지원을 통한 마약수사역량 강화

정책의 성공적인 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예산의 합리적·적극적인 지원문제이다. 마약정책 수립에 따른 원활한 마약사범의 통제를 위해서 마약범죄 수사에 필요한 예산의 연계성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경찰공무원의 보수체계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등을 근거로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 보수 등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기획예산처는 이 지침을 근거로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안 지침 및 기준’을 만들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보수는 크게 봉급,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업무활동비, 대우공무원수당에 대한 문제점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업무특성상 특정직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정직이 일반직에 비하여 평균 30% 이상의 높은 봉급우대를 받는데 비하여, 경찰과 소방은 겨우 2.9%만을 우대하고 있으며, 현재 경찰의 기본급은 철도공안이나 교도관보다 평균 -5.5%나 낮게 책정하여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정책의 문제점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또한, 야간근무수당은 야간(22:00~06:00)에 초과근무한 사람에게 실제근무일수를 전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외근이나 조사관은 현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부담을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업무활동비의 경우에도 국세청·검찰청·국정원 등 공무원에게 업무특성상 활동비를 지급하는 현실과는 다르게 관서운영비 명목으로 소액 인상하면서 변칙적으로나 수용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⁶⁴⁾

우리나라 경찰수사의 경우 수사 비는 일반형사사건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약류수사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검찰의 경우처럼 마약수사와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여 마약류 수사에 필요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범죄정보수집과 수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지급은

64) 경찰과 업무성격이 비슷한 공안직은 행정직과 같은 일반직으로 분류되어 같은 일반직보다 약 7.7%의 봉급우대를 받고 동시에 ‘대우공무원수당’도 지급받고 있으나, 경찰·소방은 특정직으로 분류되었음에도 행정직 대비 2.9%를 우대받았다고 하여 대우공무원수당(월 6%, 연 72%)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마약수사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이다. 수사비의 지원액에 따라 수사 결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마약수사는 대부분 마약구매자를 가장해 판매자에게 접근하는 함정(공작)수사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약대금을 준비해야 하지만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데다 100% 현금거래여서 자금이 늘 부족하다. 마약류는 통상 거래단위가 몇 억씩 하므로 수사요원이 수사를 함에 있어 금전적 유혹을 항상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요즘 마약 판매자들은 현장거래보다는 ‘先 대금—後 물건’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갈수록 첨단화되는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필요한 송수신기기, 감청 장비, 망원렌즈 등 과학수사 장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마약문제가 국제화·조직화되어 가는 마당에 이와 같은 부족한 장비 문제도 마약수사를 더디게 하는 장애 요인인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로, “한밤중에 벤츠를 타고 달아나는 두목급 마약 사범을 엘란트라 승용차를 타고 추격하다가 차 속도 차이로 놓쳐버렸다”며 “미국 DEA가 각종 첨단장비는 물론 헬기까지 동원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승합차와 승용차 한두대 움직이는 수준이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다”며 서울경찰청 소속 김OO 마약수사관이 털어놓은 마약사범 검거 실패담은 빈약하기 이를 데 없는 경찰의 수사현실을 가늠할 수 있는 충분한 잣대이다.

마약수사의 열악한 현실 속에서 나날이 국제화, 조직화, 첨단화되어 가는 마약범죄에 대해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첫째, 마약수사에 필요한 예산의 독립 편성체제 구축이다. 검찰은 마약·조직범죄 부를 두어 마약수사예산 편성과 마약류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경찰은 수사국 소속하에 마약수사과를 두어局단위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약수사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받는다.

위와 같이 수사국 단위에 배정된 예산에서 마약수사과로 재배정되는 예산배분 시스템으로는 매년 수사대상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 항목 중 마약수사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통상 몇 억씩 되는 고액의 마약거래 대금과 관련된 수사 비용을 적시에 지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검찰에 비해 마약수사관 인원이 적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마약사범 검거실적에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찰에도⁶⁵⁾ 마약수사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찰내부의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상호 선의적인 경쟁을 유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현대식 마약수사 장비보급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다. 기동성·신속성이 요구되는 마약수사에 있어서 마약범죄 검거에 필요한 현대식 장비의 보유는 전제조건이다. 특히,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용의 차량위치 추적 장치’와 같은 첨단장비의 보급은 경찰의 마약사범 검거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인 것이다. 또한, 휴대용 마약탐지기와 일반적 차량 8대로 마약범죄에 대처하고 있는 경찰의 열악한 마약수사 장비에 적외선 감시, 영상감시, 적외선 카메라, 무선음성 송·수신 장비 등의 지원도 시급한 실정이다.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마약류 운송장비는 날로 첨단화되어 가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에 적합한 현대식 필수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지원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셋째, 마약수사비의 적극적인 증액지원이다. 경찰의 마약수사예산은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예산의 감액현상과 경찰과 검찰 예산의 차액도 점점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⁶⁶⁾ 한편, 대검찰청 마약과의 총예산은 1997~2000년 평균 약 20억 원 안팎이며, 2001년에는 요구액이 183억 원이었으나 27억 원을 할당받았다.⁶⁷⁾ 반면 대외비로 분류한 경찰의 마약관련 총예산은 연간 3억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경찰의 빈약한 사건수사비는 마약사범 검거에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마약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인 마약수사예산의 현실적·적극적 지원이 없이는 나날이 광역화, 첨단화되어가는

65) 2005.12.31 기준으로, 마약사범 적발인원 7천여 명 중 검찰은 마약수사관 250명(대검 12, 지검마약조직부 238) 인원으로 3천여 명(40%)을 검거하였고, 경찰은 마약수사관 170명(본청 8, 지방청수사대 162) 인원이 4천여 명(60%)을 검거하였다. 한편, 공급사범 검거율에서는 검찰이 52%로 경찰 48%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다.

66) 2005년 마약수사예산은 경찰 5억 2900만원, 검찰 34억 8897억 원으로 경찰은 검찰에 비해 15% 정도 수준이고, 2006년의 경우는 경찰 4억 6,048만원, 검찰 34억 2,621만원으로 경찰은 검찰에 비해 약 13%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한편, 2005년에 비해 2006년의 경우 경찰은 6,852만 원 정도, 검찰은 6,276만 원 정도 예산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경찰과 검찰의 마약수사예산의 차액은 2005년 29억 5,997만원에서 2006년 29억 6,573만원으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경찰청 대외비 자료, 2005~2006년)

67) 조은석·김광준,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2001, p.363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다.⁶⁸⁾

제3절 국내·외 협력관계를 통한 공동대응체제의 구축

우리나라의 마약류에 대한 대응은 검찰, 경찰 등 기관별로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종합적인 공동대응 협력체제가 미흡한 상황이다. 마약범죄의 단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의 공동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관련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물론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독점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로는 실질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⁶⁹⁾ 왜냐하면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의하여 수사업무에 한하여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마약류범죄 발생 시 초동단계인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있으나 중요한 마약류 범죄나 신병처리 등에 관하여는 초동단계부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는 지휘권수사를 하고 있어 경찰 책임에 따른 마약수사를 하기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⁷⁰⁾

또한, 과거 선진국의 문제로만 인식되었던 마약류문제가 최근에는 제3세계 국가도 마약류 남용 습관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는 일부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나라들이 직면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마약단속에 대해서는 국제조약과 양자 간의 조약, 자금세탁에 대한 규제 등 제도적 장치들이 잘 마련되어 있고, 각국이 국제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 부응하여 범죄인인도법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제정하여 외국으로부터 공조요청에 부응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사실적인 협력이 주

68) 호주의 경우, 2002년에서 2004년간 마약퇴치 및 공조강화를 위한 호주의 국가마약퇴치전략이 수립되었으며,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마약류 척결을 위해 연방정부는 약 3억5천4백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69)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196조에서는 검사에게 수사의 진행·개시·종결 권과 기소독점·편의 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사의 지휘를 통해서만 원칙적으로 관련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인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의 사회적 이슈로의 대두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70) 이와 같은 경찰의 국내 마약수사 환경에 대한 해결방안은 제3장 제1절에서 논한 '수사권 조정을 통한 소프트웨어 강화' 방안으로 같음한다.

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침해의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는 등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정식절차가 잘 이용되지 않는 데에는 법적 절차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⁷¹⁾

이러한 세계적 추세로 인해 불법마약의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국제연합(United Nations)을 중심으로 한 범세계적 국제협력체제를 형성하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제연합의 마약관련기구로는 유엔마약통제본부(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rug Control Programme ; UNDCP), 국제범죄센터(Centre for International Crime Prevention ; CICP),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 UNDCP),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 INCB), 유엔 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s ; CND), 아시아태평양지역 마약법집행 기관장회의(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ies, Asia and the pacific - HONLEA) 등이 있다. 위와 같은 국제연합 주도하에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및 1972년 개정의정서,⁷²⁾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⁷³⁾ 1988년 마약류 불법거래방지협약⁷⁴⁾ 등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⁷⁵⁾

이러한 국제협력체제에 부합하여 우리나라도 1995년 12월 6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있으며, 2001년 이를 다른 조직범죄에도 확대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하여 마약을 매개로 한 조직범죄의 경제기반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금세탁의 범죄화와 마약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익은 물론 간접적으로 취득한 부정수익까지도 몰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71) 신의기, “외국 마약조직의 국내침투 실태와 차단 방안”, 「국제범죄 대응정책 연구논총」, 창간호, 2005, p.168

72) 기존 마약에 관한 국제협약을 단일화 한 협약으로, 현재 116개의 마약이 관리대상이며 아편, 헤로인, 모르핀 및 코데인 등의 천연마약과 메사돈, 페치딘 등의 합성마약, 코카인 및 대마 등을 통제하고, 2002년 12월 현재 173개국이 회원국이며, 우리나라는 1964년에 가입하였다.

73) 관리대상 물질은 주로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의약품에 포함되어 있는 향정신성 물질로 각성제, 환각제, 항우울제 및 진통제 등으로 현재 111개이며, 2002년 12월 현재 172개국이 회원국이며, 우리나라는 1978년 가입하였다.

74) 불법 마약류의 국제적 이동 및 불법 자금세탁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제조에 사용되는 에페드린, 아세톤, 무수초산 등 22가지 원료물질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협약으로, 자금세탁처벌·불법수익몰수·범죄인인도·통제배달기법·화학물질통제·해상불법거래방지·국제우편물 규제 등을 주요 임무로 한다.

75)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5, pp. 235-238

되었다.⁷⁶⁾

마약류 문제는 이미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국가 모두의 공동책임이라는 깊은 인식 하에 보다 긴밀한 국제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 대처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국간 신속한 정보교환과 폭넓은 수사공조를 포함한 적극적인 지역간 협력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결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유엔 마약통제본부 등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협력과 기여를 통해 마약퇴치를 위한 모색을 해야 한다.⁷⁷⁾

제4절 치료와 재활을 통한 사회로의 복귀

마약류 문제를 법적으로 검토할 경우 한 번은 논의되어야 할 문제가 과연 마약류 사용 죄를 처벌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마약류 사용자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보통 형사 처벌모델(punishment model)과 치료모델(treatment model)의 두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약류의 남용을 범죄적인 행위로 보고 형사 처벌을 하고 있고, 거래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류의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을 박탈하는 법을 제정하는 등 강력한 단속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국제조약으로도 마약류의 거래에 의한 수익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는 등 마약류의 거래로 얻는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강력하게 마약류를 단속해야 한다는 정책이 국제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⁷⁸⁾

그러나, 마약류 남용자를 범죄자라기보다는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예방과 치료를 함께 병행하여야만 마약류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 즉, 마약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마약류사범의 근절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다른 해결책들과 병행되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마약류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약류 문제의 위험성에 대한 국

76) 신의기, “외국 마약조직의 국내침투 실태와 차단 방안”, 「국제범죄 대응정책 연구논총」, 창간호, 2005, p.147

77) 황진수, “마약류 범죄 실태와 경찰의 역할”, 「마약범죄연구」 제6권 제0호, 2000, pp.34-36

78) 신의기, “마약류 남용에 대한 처리와 치료·재활”, 2004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04. p.76

민적 인식을 높이고, 국민적 합의에 근거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것이다.⁷⁹⁾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2005년 3월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11인의 여야 국회의원은 ‘마약류·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그 제안취지는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한 단속에 중점을 두던 정책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투약사범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현행 엄벌위주의 정책에서는 마약사범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통한 치료재활과 자발적 치료를 촉진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 등의 남용 및 중독을 예방하는 동시에 재범을 방지하여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와 보호에 역점을 두는 非범죄화 정책에 부합하는 이 법률안은, 마약류 중독을 범죄라기보다는 질병으로 간주하여 치료에 중점을 두어 마약류 남용자나 중독자를 공공의료체계로 유인, 마약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해악 최소화(harm reduction)’하고, ‘범죄화 vs. 합법화 정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종의 대안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⁸⁰⁾

우리나라 마약류 남용자에 대한 치료 재활제도로는 교정치료, 치료감호, 보호관찰 및 치료보호제도가 있다. 교정치료는 교정시설에서 기결 및 미결 수용자를 대상으로 약물 중독을 치료하는 제도이며, 치료감호는 마약류 중독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판결로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하여 치료를 명하는 제도이다

또한, 보호관찰은 범죄자에 대한 수사, 재판, 교정, 갹생보호 등을 통하여 생활근거지를 바탕으로 재범 예방활동을 하는 제도이며, 치료보호는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인 치료보호기관으로 하여금 마약류 중독자의 중독여부를 검사하거나 치료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치료 프로그램들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필수적인 요소들을 강조

79) 신의기(2004), 상계서, pp.83-85

80) 조성권, “21세기 국가 反마약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21세기 한국 마약정책의 새 방향』, 2002, pp.183-185

하는데 초점을 맞춰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영역들을 다루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제4장 결 론

마약문제는 전 세계의 관심사로 마약과의 전쟁은 너무 어렵고도 위험한 일이다. 마약류 범죄의 국제화, 다변화,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의 범국가적인 노력과 유관기관들의 강력한 대응활동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범죄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마약류 문제가 종전과는 다른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마약류 밀반입의 급속한 증가추세와 남용계층의 확산, 마약류 밀거래 수법의 첨단화·지능화, 마약류 공급루트의 국제적 연계성과 변화의 다양성, 외국인 마약사범의 지속적 증가, 조직폭력배의 마약류범죄에 대한 개입 현상 등에 기인된바, 이러한 마약류범죄 양상에 체계적이고 순발력 있는 대응능력 발휘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마약류 문제가 단순히 국내적 문제를 벗어나 국제적 범죄조직까지 연계성을 지니면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범죄를 완전히 통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논자는 최근 마약류 범죄현황과 실태 및 분석을 살펴본 바, 경찰의 취약한 마약류 범죄수사 체제구축에 대해 개선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발견했다.

제3장 제1절에서 제시한 현행법상 수사권 부재 등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마약전담인력 및 예산부족 등 하드웨어의 취약문제, 유관기관 간 공동대응체제의 미흡, 국제협력체제상의 어려움 등 4개 부분을 경찰이 당면한 문제점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 실태에 대해 경찰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제3장 제2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사권 조정을 통한 공조체제 발전, 수사경과제 도입과 마약수사관 전문성 향상, 적극적 예산지원을 통한 마약수사역량 강화, 국제협력관계의 지속적 강화, 치료와 재활을 통한 사회로의 복귀 등을 통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기도 하였다.

특히, 마약류 범죄수사는 선진국의 경우 경찰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대국민 수사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경찰의 역량 강화를 동시

에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부여하여 국가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지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약사범을 우리나라에서 청산하는데 필수적인 마약수사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은 물론 국가기관 간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간에도 공조체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마약류 범죄에 있어 우리나라는 청정지대에서 점차 오염지대로 점차 전이되고 있다. 특히, 마약의 안전지대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에서 마약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경찰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어야 한다. 경찰력은 전국 어느 곳에서나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최일선에서 대민과 활발한 접촉을 바탕으로 24시간 가동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검찰보다 마약류범죄에 대해 첩보나 정보획득 측면에서 유리한 조직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경찰은 마약공급 차단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조직을 개편하면서 마약류범죄와 관련하여 마약류수사기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마약류 수요억제 정책에도 주력하여 마약사범들이 마약을 공급할 대상을 찾지 못하여 스스로 자멸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도 있으며,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요즈음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마약류 남용 근절을 위해서 경찰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마약류 퇴치방안에 대한 국가 정책적 우선순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간, 형사사법기관과 시민 단체 간, 가족과 그 구성원 간에 한 마음 한뜻이 되어 마약문제를 풀기 위해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마약류 범죄로부터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가가 마약 안전지대로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마약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체계적, 합리적인 마약수사역량 강화와 각 기능별 상호 공조협력체제의 구축 및 지속적 협력활동을 전개하는데 국가 전반적인 역량을 집중하여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마약 오남용을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서도 단기간 내에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 관계기관간 적극적인 협력 체제 구축 및 국민의 열성적인 관심이 모아질 때 비로소 좋은 결실이 맺어지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경찰청, 「경찰백서」, 2005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04
- 관세청, 「최근 마약류 밀수동향」, 2002
- 국가정보원, 「국제범죄 대응정책 연구논총」, 2005
- 국가정보원, 「마약류해설」, 2003
- 대검찰청, “마약관련통계”, 2006.3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5
- 小田中聰樹(1986), 刑事訴訟法の史的構造

2. 연구논문

- 김동인, “한국 마약범죄와 마약정책에 대한 연구”, 한성대, 2003
- 김종기, “국제 마약류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고려대, 2000
- 민성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중앙대, 2002
- 박건호,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 2002
- 배성태, “국제마약류 확산에 따른 21세기 한국마약정책에 관한 연구”, 한성대, 2005
- 송광섭, “우리나라 마약류범죄의 최근 동향과 그 대처방안”, 비교형사법 연구 제 4권 제1호, 2002
- 신의기, “마약류 남용에 대한 처리와 치료·재활”, 2004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04
- 신의기, “외국 마약조직의 국내침투 실태와 차단방안”, 국제범죄 대응정책 연구논총, 국가정보원, 2005
- 윤정석,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동향”, 형사정책연구소식 37호, 1996
- 임대환, “마약밀수 단속의 효율화 방안”, 연세대, 2000
- 전대양, “신종 마약류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2003

전영화, “마약류범죄의 실태분석과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1998

정대표, “한국의 마약문제의 실태와 대응”, 동북아시아 마약문제의 실태와 해결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정세준, “마약류 문제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2002

조병인, “마약류 규제정책의 재조명”, 「치안정책연구」 6호, 1996

조병인, “마약류 불법유통과 규제전략”,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2호, 2002

조성권, “21세기 국가 반마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21세기 한국 마약정책의 새 방향, 2002

조은석·김광준,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최재형,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의 실태와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1999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의 마약퇴치 정책 연구, 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2001

황진수, “마약류 범죄실태와 경찰의 역할”, 마약범죄연구 제6권 제0호, 2000

황진수, “한국 마약류 퇴치정책에 관한 연구”, 마약범죄학회보 6호, 1998

황진수, “한국 마약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8호, 1994

3. 신문 및 잡지

경향신문 04/09/20

동아일보 05/03/03

대한매일 00/12/11

<http://www.donga.com>, 97/11/27

4. 관련 웹사이트

경찰청, <http://www.police.go.kr/>, 수사구조개혁, 05/05/03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국정원, <http://www.nis.go.kr/>

대검찰청, <http://spo.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식품의약품안전청, <http://www.kfda.go.kr/>

약물상담가협회, <http://www.yakmul119.com/>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http://www.drugfree.or.kr/>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http://www.kodcar.or.kr/>

한성대 국제마약학과, <http://www.drug.ac.kr/>

DEA, <http://www.usdoj.gov/dea>.

INCB, <http://www.incb.org/incb/index.html>

UNODC, <http://www.unodc.org/unodc/index.html>

ABSTRACT

A STUDY ON KOREAN DRUG CRIME AND CONTROL METHODS FOR POLICEMEN

young whan. Choi

Major in Drug Control Policies

Dept. of International Narcotics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Hansung University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scientific research has developed rapidly, and national borders have been erased by Globalization. Drugs are an international problem, no longer a domestic one. Moreover, the drug problem, along with war and environmental disruption, has become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facing society today. Drug abuse/misuse is a social evil which destroys the body and the mind as well as the home, the society, and the nation.

As the world has become more globalized, drug crime organizations have become more likely to be linked to the domestic crime organizations of every country. For this reason, if we do not put a stop to drug-related

crime now, we will have to pay the consequences for it later.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in the 21 century has helped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s such as the Japanese Yakuza, the Russian Mafias, and the Chinese Triad to become larger and more specialized. Korea, which had recently been considered a drug-safe country, is now being invaded by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s and is suffering from an increasing influx of foreign-made drugs. In addition, domestic crime organizations are becoming linked to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s and are starting to deal in the drug business.

After suffering through the IMF period, the Korean economy has now begun to recover. At the same time, the dark side of society has started to reveal itself; the potential for crime has increased; and drug related crimes have become more diverse. This is having serious effects on the bodies and minds of the Korean people.

Especially, drug consumption has expended to include ordinary people such as housewives, students, and farmers, as well as professionals. Now is the proper time for the government to establish policies and recognize the need for international partnerships to help eradicate drug supply and consumption.

Give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make clear the recent trends in Korean drug crime and suggest realistic control methods that policemen can follow. First of all, the concept of drugs will be defined to enlarge our insight into drug crime and point out the actual conditions of Korean drug crime that need to be investigated. Second, the problems which Korean policemen face must be disclosed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organization and alternative schemes must be laid out on the basis of the problems. Las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a solution to drug crime that is appropriate for Korea and suggest a desirable control method.